

第 32 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 議 錄

('93. 12. 9~12. 11)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1. 제3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3
2. 제3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7
3. 부 록	
가) 의사일정(안).....	49
나) 충청북도고등학교선발고사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학군설정에관한조 례폐지조례안.....	51
다)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5

라)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 관한 고시안	59
마) '95학년도 국·중학교설립계획변경안.....	81
바) 교동국민학교 이전계획안.....	85
사)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95

본 회의 회의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록

1993년 12월 9일 (목요일) 11시 00분

의사일정 (제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3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충청북도고등학교선발고사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학군설정에
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
안
6. '95학년도 국·중학교설립계획변경안
7. 교동국민학교이전계획안
8.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 경과보고
2. 제3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충청북도고등학교선발고사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학군설정에

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6.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안
7. '95학년도 국·중학교설립계획변경안
8. 교동국민학교이전계획안
9.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0.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사회 : 의사과장 강인형)

(11시 00분 개식)

● 의사과장 강인형

지금부터 제3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바로 본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 의장 김영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경과보고

(11시 03분)

● 의사과장 강인형

의사과장 강인형입니다.

먼저 제32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12월 1일 교육감으로부터 집회요구되어 동일자로 공고하여 오

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1회 의결안건 처리결과입니다.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11월 30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집회요구시 제출하여 배부해 드린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의안과 12월 6일 추가로 제출된 교동국민학교이전계획 등 2건의 의안, 제30회 정기회에서 제안설명들이셨던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권혁풍 교육위원 외 세분위원으로부터 발의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었고, 12월 10일은 의안과 관련된 현장방문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3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사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 04분)

● 의장 김영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사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통보해 드린 바와 같이 제3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사회는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으로 하여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전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만, 12월 10일은 의안과 관련된 현장방문을 위하여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제3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사회 회기는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 05분)

● 의장 김영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권혁풍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풍위원 발언대로 나옴)

● 권혁풍 위원

권혁풍 교육위원입니다.

본인 외 3인의 위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및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출석일자는 '93년 12월 11일 11시로 제3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입니다.

출석대상자는 초등교육국장 과 중등교육국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요구이유는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것입니다.

이상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한 바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세

예, 권혁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해서 이의있으십니까?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예,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안된 바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고등학교선발고사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학군설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1시 08분)

● 의장 김영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고등학교선발고사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학군설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중등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집행석에서 잠시 머뭇거림)

중등교육국 소관아니에요?

(중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중등교육국장 박춘용입니다.

충청북도고등학교선발고사추첨배정

입학제도적용지역의학군설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을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조례로 제정, 시행토록돼있던 고등학교선발고사추첨배정입학제도 적용지역의 학군설정에 관한사항을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고시하도록 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되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여 행정의 간소화 및 능률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폐지근거는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 8, 후기 고등학교의 신입생선발 및 배정방법에 관한 내용 제2항입니다.

조례안은 덧붙임과 같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취를 덧붙였습니다.

또 예산사항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지조례안은 "충청북도고등학교 선발고사 추첨배정입학제도 적용지역의 학군설정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칙은 "공포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참 조>

충청북도고등학교선발고사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학군설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별첨2

(끝에 실음)

● 의장 김영세

예, 중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지죠.

본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은 제2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6.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안

(11시 11분)

● 의장 김영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중학교학교군

(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안을 상호 연관된 동일부서 소관 안전이므로 두 안전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먼저 충청북도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폐지 사유로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와 입학할 중학교의 추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도록 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폐지 근거는 교육법시행령 제69조 입학등의 허가 제5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덧붙임과 같고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발취를 뒤에 덧붙였으며,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내용은 "충청북도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로는 교육법시행령 제69조 제5항 및 제112조의 8,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폐지하고 본 고시안을 제정해가지고 행정의 간소화 및 능률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는 별표 1과 같고 중학교 학교군 추천방법은 지역교육청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며,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은 단일 학교군으로 되겠습니다.

제안 근거는 교육법시행령 제69조 제5항 및 제112조의 8, 제2항이 되겠습니다.

고시안은 덧붙임과 같고, 기타 참

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발체서는 덧붙임과 같고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 관한 고시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충청북도의 중학교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과 청주시 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교군 및 중학구, 제1항 "충청북도 중학교의 지역별 학교군 및 중학구는 별표1과 같다."

제2항, "청주시 후기고등학교의 학교군은 단일학교군으로 한다."

제3조 추첨방법, "중학교 학교군 내의 추첨방법은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하되 기타 추첨에 필요한 사항은 매년 중학교 진학업무 추진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제4조 학교군내 배정의 예외, "중학교 입학지원자의 통학편의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희망자에 한하

여 인근학교에 선배정할 수 있다."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항 경과조치, "제2조 제1항의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중 변경된 다음 각호의 사항은 199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1호, 청주시 제1학교군에 남성중학교에 청주시 성화개신죽림동 18 - 25통, 제2학교군에 울량중학교, 제3학교군에 청주시 성화개신죽림동 26통, 2호 충주시 학교군에 충주 중앙중학교, 3호 괴산군 장연중학구인 괴산군 장연면 조곡리는 목도중학구와 공동학구, 제4호 영동군 용문중학구인 옥천군 청성면 조천리, 묘금리, 양저리는 옥천중학구와 공동학구 5호 옥천군 청산중학구인 옥천군 청성면 삼남리는 옥천중학구와 공동학구" 이하 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들으신 안건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법시행령의 개정에 따

라서 조례로 정하던 것을 교육감이 고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동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먼저 설명들으신 고등학교 학군에 관련된 폐지조례안과 같이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예, 그러면 이의없으시므로 동 폐지조례안과 학군관련 고시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 '95학년도 국·중학교설립계획변경안

8. 교동국민학교이전계획안

(11시 18분)

● 의장 김영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5학년도 국·중학교설립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7항 교동국민학교 이전계획안은 상호 연관된 안건으로 역시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95학년도 국·중학교설립계획변경안과 교동국민학교 이전계획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교동국민학교 이전계획안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95학년도 국·중학교설립계획변경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동국민학교이전계획안의 목적은 청주시 도심지 인구 공동화 현상에 의한 학령 아동수의 감소로 교동국민학교가 소규모화 되고 있고, 청주시 동편 중심부에 있는 주성, 중앙, 우암국민학교와 인접하여 학구관리 및 학교간 균형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관계로 균형적인 학교재배치로 열악한 교육시설을 현대화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및 교육재정의 효율화라도 모하고자 이전을 계획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전계획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전시기는 95년 3월 1일로 예정을 하고 있으며, 이전의 위치는 현재 청주시 수동 180번지에서 청주시 용암동 택지개발지구내 가칭 용암국민학교로

이전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교동국민학교 현황을 말씀드리면, 19학급에 학생수가 760명이 있으며, 부지가 만3,449㎡, 교실이 32.5교실, 사택 1동, 창고 2동, 화장실 3동, 교직원은 교원 23명, 일반직 1명, 기능직 4명, 합해서 2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학생수용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교동국민학교의 학생수는 760명입니다마는 '95학년도에는 656명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656명의 학생을 주성국민학교로 31명, 중앙국민학교로 406명, 우암국민학교로 216명을 각각 분산해서 수용을 하는 계획입니다.

그 통학구역은 표에 나와있는 것 같이 현행 북문로 2가 5통에서부터 수동 14통부터 19통까진데, 이것은 각각 주성국민학교, 중앙국민학교, 우암국민학교로 분산해서 통학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학교의 수용계획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교동국민학교가 19학급이고 주성국민학교가 30학급, 중앙

국민학교가 35학급, 우암국민학교가 34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 이 학생들을 그 주성, 중앙, 우암으로다가 분산수용을 할 경우에 주성국민학교는 한 학급이 는 993명이 되겠고, 중앙국민학교는 9개 학급이 늘어서 37개 학급으로 1,526명이 되겠으며, 우암국민학교는 4개 학급이 증설되는 31개 학급으로 1,286명이 되겠습니다.

그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전부 충족돼있기 때문에 교실 수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에 이전 후에 교동국민학교 이전후에 그 수용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규모는 36학급이고, 학생수는 1,512명이며, 소요교실수는 보통교실 36학급 특별교실 5학급, 관리실 3개 학급아, 3실, 그래서 44개 교실이 되겠습니다.

이 학생들은 청남국민학교의 학구가 일부 조정이 되고, 나머지 학생수는 그 새로 신설되는 용암지역에 자체학생으로 수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하고 나서의 후의

교동국민학교의 사용계획은 청원군 가덕면 상야리 산 4-23번지에 위치한 충청북도 과학교육원을 이전을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교육장의견서, 교동국민학교장의 의견서, 현행 학구도, 조정학구도, 교동국민학교 이전위치도를 각각 한 부씩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음 '95학년도 국·중학교설립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변경사유로는 교동국민학교 이전계획에 의거, 용암동 택지개발 지구내에 '95학년도 신설예정인 가청 용암국민학교 부지로 교동국민학교를 이전함에 따라 제2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95학년도 국·중학교 설립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초에 의결해주신 내용은 국민학교를 청주에 2개교, 제천에 1개교, 중학교를 청주에 1개교를 설립하는 거로 돼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음장에 보시면은 청주에

용암국민학교가 교동국민학교로 변경되기 때문에 국민학교 청주에 2개교 중에 용암국민학교를 빼고 청주의 방죽국민학교 한군데, 제천의 하소국민학교, 청주에 용암중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용암국민학교 설립계획을 취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용암국민학교 학생수용계획을 교동국민학교 학생수용계획으로 변경을 하고 용암국민학교 소요예산을 교동국민학교 이전 소요예산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교동국민학교 이전안에 대해서는 그 교동국민학교의 여건, 또 이 학교의 여러 구성원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다분히 수렴해야 할 이러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가지 그 충분한 검토를 하고, 현장확인을 해서 우리가 의결할 사항이므로 금번 회기에서는 의결을 유보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가 의견수렴이 다 끝나

면 다음 회기에 소집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본 의견에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예, 이의없으시면은 그러면 본 안건을 다음 회기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1시 26분)

● 의장 김영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리국장께서 또 한번 나와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9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충청북도증평출장소에서 증평공공도서관을 증평국민학교 부지내에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용허가

부지에 영구건축물을 축조하려면은 시설물을 기부채납하여야 하나, 증평공공도서관을 기부채납하려면 사전에 충청북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비 8억9,700만원 중 2억2,000만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93년도 말 이내에 추진하여야 하는 등 시기적으로 볼 때에 도의회의 승인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또한 우선 무상사용을 허가해주면은 시설이 완공되고, 집기, 도서, 행정장비 등 도서관 필수시설을 완비한 후에 기부채납토록 하겠다는 충청북도증평출장소장의 공문에 따라서 무상사용허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 및 의결도 제2차 본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11시 29분)

● 의장 김영세

다음은 회의록 서명위원을 선출하

<p>고자 합니다.</p> <p>홍신희, 장충호 두분 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p> <p>(위원 모두 "좋습니다."하고 말함)</p> <p>예, 이의없으시죠.</p> <p>이의가 없으므로 제32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홍신희, 장충호 두분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p> <p>두분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p>	<p>바라며 내일은 의안심의와 관련한 현장방문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p> <p>이상으로 제3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1시 30분 산회)</p>
---	---

- 출석위원 : 11명
 의장 김영세, 부의장 이상일, 이재희, 홍신희, 김응복, 이근수, 김광수, 박병해, 김사수, 권혁풍, 장충호.
- 출석공무원 : 14명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관리국장 신재철, 공보담당관 정금옥,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초등장학과장 김학목, 초등교직과장 김재성, 중등교직과장 임순재, 과학기술과장 정기우, 사회교육체육과장 이광용,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정헌동.
- 의사일정(안) : 별첨1
- 충청북도고등학교선발고사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학군설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별첨2
-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별첨3

-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안
: 별첨4
- '95학년도 국·중학교설립계획변경안 : 별첨5
- 교동국민학교 이전계획안 : 별첨6
-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별첨7

본 회 의 회 의 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록

1993년 12월 11일 (토요일) 11시 00분

의 사 일 정 (제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고등학교선발고사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학군설정에관한 조례폐지조례안
2.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안
4.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5.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7. 기타 안건 처리

부 의 된 안 건

1. 경과보고
2. 충청북도고등학교선발고사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학군설정에관한 조례폐지조례안
3.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

안

- 5.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6.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7.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8. 기타 안전 처리
- 9. 폐회사

(11시 00분 개의)

● 의장 김영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경과보고

(11시 01분)

● 의사과장 강인형
의사과장 강인형입니다.
금일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들으신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 및중학 구에 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4건의 의안과 제30회 정기회에서 제안설명 들으셨던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신후 교 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2. 충청북도고등학교선발고사추 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학군설 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3.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 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4.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 및정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 한고시안

(11시 02분)

● 의장 김영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고 등학교선발고사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 지역학군설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중학교학교 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 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 (중학구) 및정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 에관한고시안은 상호 연관된 안건이

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일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예, 이상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상일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안, 19페이지, 19쪽에 관한 것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19쪽에 보시면 강원도 귀래중학구에, 강원도 귀래중학구에 귀래중학교에 증원군 소태면 주치리 야촌동네가 귀래중학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소태면 하남리가 우리 충청북도 조례에는 엄정면 신명중학교 학구로 되어 있고 강원도 조례에는 원주군 귀래중학교로 학구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남부락에 학생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 5,6명정도 되는데, 그 학생들을 우리 충북에서는 신명학구로 해서 그쪽에 못가게 하고, 강원도 그 귀래

중학교에서는 강원도 조례에 따라서 자기네 학구니까 자기네 학구로 데려가겠다해서 학생 한 4,5명을 가지고 작년에도 문제가 생긴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아마 3-5명에 따라서 학급이 하나 더 편성이 더 되고 덜 되고 하는 어려움이 있는 모양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양쪽이 서로 그렇게 됐는지 그걸 좀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님께십니까?

지금 일괄 상정한 3건을 다 일괄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해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예, 박병해위원 질의하세요.

● 박병해 위원

예, 여기 지금 저 말씀하신 19쪽의 다음에 21쪽에 첫번째에 보시면 "거리 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에는 중학구를 설정하여 그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며 지체부자유자에 대한 당해 학교군내의 학교 중 특정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은 이제 가령 청주중학교, 그러면 청주 중학교에 아주 가깝게 있는 학생들이 이 학생들이 저 동중에 이런데 가서 배정이 되면은 통학상 편 불편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미리 청주 중학교에 "나는 청주중학교 배정을 하게 해주세요."하는 이거 아십니까? 이거?

(집행석에서 "그렇습니다."하고 말함)

그러면 그 범위는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거고 또 그거를 하려면 서류를 어떤 걸 뭘 어떻게 갖춰야 되는 거냐 이걸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 의장 김영세

예, 또 다른 위원, 박병해 위원은 질의 마치셨죠?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예, 권혁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혁풍 위원

저는 그 학군에 관한 말씀인데요.

13페이지에 보시면 음성군에 그 삼성중학교 학군에 14페이지에 보면 호산2구는 있는데 호산1구가 어디가 있

는지 모르겠습니다.

1구가 어딘가 있을텐데, 1구가 혹시 빠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간단한데,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관계관계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국장 신재철

(집행석에서)

조금만 시간을 주셔야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얼마나, 한 10분 드릴까요?

● 관리국장 신재철

(집행석에서)

예.

● 의장 김영세

예,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회의계속)

● 의장 김영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계관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먼저 이상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원군 신명중학구하고 이쪽의 귀래
중학교 이 학구관계때문에 말씀이 제
셨는데, 그 주치리의 하남부락하고
은대부락이 지금 신명중학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그 거리상으로는 귀
래학교까지는 5km밖에 안되고 신명중
학교까지는 14km정도 되는데, 그 하
남부락에서는 남한강을 도강을 해서
그쪽으로 건너가야 되고 그러한 불편
이 있기 때문에 신명중학교 학구로다
가 그 사람들이 원해서 했던건데, 이
게 지금 양쪽 학교가 서로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신명에서는 몇명이라도 빼앗기면은
그나마 지금 영세학교에서 지금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들고 하나까 거기서

버티고 있고, 저쪽에서는 자기들이
본래의 그 자기도니까 데려가겠다 지
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은 앞으로 언젠가는 협상을 해가
지고 공동학구로 한다든지 해야 될
문젠데 다만 한가지 공동학구로 한다
고하면은 저쪽으로 갈 그 확률은 많
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강원도하
고 언젠가는 넘어가야 할 사람이면
넘겨줘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협의
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 다음에 박병해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그 지체부자유 학생의 그 입학
관계는 지체부자유자 증명서를 병원
에서 발급받아가지고 그 시·군교육
청에 제출을 하면은 교육장이 사전에
심사를 해서 제일 가까운 학교로 배
정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혁풍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호산 1구는 19페이지 맨위에를
보시면은 타시·도 전출생 중학구에
경기도 배영중학구에 음성군 금왕읍
호산리 1구가 배영중학교로 가게 돼

있습니다.

2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성으로 오는데 호산리 1구는 경기 배영중학구로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보충질의 더 있으십니까?

● 박병해 위원

지체부자유뿐이 아니라 가령 청주중학교에 그 근방에 사는 아이들이 저 동중으로 떨어질까 봐서 미리 "나는 청주중학교로다가 배정을 해주시오"하는 것이 지금 그 취지인데.....

● 관리국장 신재철

아 그럼 그 저 2페이지를 보시면요 그 충청북도중학군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안 2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4조에, 4조에 거기 나와 있습니다.

4조에 보시면은 "학교군의 배정을 위해서 중학교입학지원자의 통학편의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희망자에 한하여 인근 학교에 선배정할 수 있다"해가지고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까운 학교를 두고 멀리

가기는 나쁘다" 할 경우에는 그런 그 자기의 희망원서를 받아가지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배정을 하고 나머지는 추첨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 박병해 위원

그러니까 인재 그게, 그게 인근이라고 하는 게 어느 범위를 얘기하는 거냐, 이거요.

● 관리국장 신재철

예를 들어서 강서에서 지금 강서옆에 있는 한국 교원대학교 그 부근에 있는 그런 데 미호중학교내 이런 데를 두고 이쪽에 그 학구가 지금 그 서문 그 무심천을 중심으로 해서 갈라지거든요.

이쪽으로 배정이 되는 건 너무 멀다, 그럴 경우에는 그쪽에 중학교, 거기가 좀 미호중학교가 이쪽보다는 좀 조건이 좋지 않더라도 "나는 가까운 학교에 가겠다"고 하면은 그쪽으로 해줍니다.

그대신 "나는 멀어도 좋으니까 이쪽으로 떨어지길 희망해서 난 이쪽으로 추첨배정해서 가겠다." 하면은 그

건 봐두고요.

● 박병해 위원

그런데 이제 잘못하면은 저 먼 데 학구는 청주학구인데 먼 데 있는 학생이 "그 근방에 있는 어느 학구에 가는 것 보다는 청주중학교에 떨어지고 싶다" 이래서 원하면 어떡하느냐.

● 관리국장 신재철

아 그거는 그렇게는 안됩니다.

어느 지역에 있는 학생은 바로 인근 이 중학교에만 갈 수 있는 지역을 고시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청주중학교 이러니까 저 멀리서 "난 청중가겠다"하고 지원하는 것은 인정을 안해주죠.

● 박병해 위원

그렇게 갖다가 붙여서 할 때는 그만큼 어떤 이유를 붙이지, 또.

● 관리국장 신재철

아니 그건 저 주민등록을 뭐 그전에 옮겼거나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현재 그 지역에 살면서 지역교육장이 "이 지역에 있는 학생은 인근 바로 이 학교에 밖에 안된다"할 경우에

는 그 학교밖에 못가는 거죠.

이쪽 건너서, 그걸 지나서 이쪽의 좋은 학교로 오지는 못합니다.

● 박병해 위원

청주시내 같으면은 지금 그게 불확실하거든.

청주중학교, 주성중학교, 뭐 이쪽에 이게 한타작으로 다 돼있거든.

● 관리국장 신재철

나뉘져있죠, 학군이요.

● 박병해 위원

아니.....

● 의장 김영세

그, 저 선배정할 대상이 돼있습니다

● 관리국장 신재철

예, 돼있습니다.

저 고시로 돼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뭐 악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 부교육감 박동기

(집행석에서)

청중, 주중은 선배정이 안돼요.

● 관리국장 신재철

예, 그건 되질 않는 지역입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또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할 분 없으시죠.

예,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반대토론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대토론 없으십니까?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예, 그러면 반대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시죠?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그러면 반대토론없기 때문에 뭐 찬성토론없으시죠?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예,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들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각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고등학교선발고사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학군설정에 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

으신 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예,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고등학교선발고사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학군설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으시죠?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안에 대하여 이의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예, 이의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6.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분들 일괄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침묵)

4항, 5항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럼 질의하실 분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이 없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합니다.

이의없으시죠?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예,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

경안에 대하여 이의있으십니까?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예,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있으십니까?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예, 이의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11시 32분)

● 의장 김영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권혁풍위원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풍 위원

제가 몇가지 질문을 던져드렸습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수차에 걸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을 한번

요새와서는 조금 좀 분위기가 이상해져서 질문을 받는 측에서 좀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든가, 혹은 이걸 좀 꺾고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유형을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제가 스스로 하는 질문에 대해서.

몇가지를 유형을 분류를 해보니까 첫째가 그 순수한 의문이 나서 질문한 게 있습니다.

사실에 관한 질문인데, 어떤 사실이 있었던가 없었던가 하는 그런 순수한 의문, 이거는 주민들의 알 권리와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나도 알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질문, 언론에서도 이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마는 이러한 순수한 의문에서 나오는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떤 그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를 제기시키는 그런 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라든가 주민의 의사가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 거기에 대한 잠을 자고 있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스스로 일으

키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을 놓고서 비판을 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 그래서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을 찾아서 그 당위성을 묻는 그런 질문도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그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걸 반복질문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촉구형이다.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어떤 그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좀 더 연구를 하고 그 해결방안을 찾아보자는 그런 해결촉구, 그러한 그 촉구형, 이렇게 아마 너덧가지로다 제가 그 질문을 유형화시켜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청에서도 참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질문하는 측에서는 이러한 그 뭔가 의도가 있으니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실히 좀 답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세가집니다.

첫째가, '94년도 대학입시 2차수능

시험을 봤는데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분석까지는 제가 질문을 못드리고 그 동안 있었던 운영상의 차질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서 그런 차질이 있었는가 하는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늘 전인교육을 부르짖는데 종래의 그 참 학력고사하고 수능고사하고 조금 성질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수능시험과 전인교육과는 어떤 그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거기에 좀 접근이 돼야 할 텐데 좀 접근이 돼있으리라고 저도 보는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수능시험이 끝났는데 끝난 뒤에 학생들은 지금 참 학교에 나가서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 물론 학교 나름대로의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지도를 하겠습니까마는 그 생활지도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능종료, 시험종료후의 생

활지도 대책이 뭔가 이걸 묻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좀 나가서 수능시험과 그 보충수업과의 관계, 이것도 아울러 묻겠습니다.

보충수업을 우리가 하는데 수능시험에 대비해서 보충수업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보충수업을 해야 마땅한가 사실, 보충수업의 취지는 지진아를 갖다 놓고서 보통학생들과 진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 보충수업의 그 본 취지인데, 여태까지 보충수업은 사실 그걸 벗어나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보충수업과 그 수능시험과도 무슨 연계성이 있어야 할 텐데, "그냥 하라는 거니까 한다. 관행대로 한다." 이래가지고는 안될 것 같습니다.

뭔가 좀 관계가 있으리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쌀개방때문에 상당히 참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볼 때, 국제화시대, 뭐 개방화시대 이런 그 시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가장 그 시대에 민감한 학과가 사회과라고 보겠습니다.

아울러 그 쌀과 관계라든가 모든 그 농산물뿐 아니라 모든 그 수출입 품목에 관해서 관계가 되는 학과가 실과라고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회과나 실과가 어떻게 지도를 학생들한테 여기에 시대에 맞게 지도를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 장학방침이 뭔가 즉각적으로 나오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뜻에서 그 대응이 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의회에서도 많이 얘기가 된 겁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질타가 된 거고 하는 얘인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역시 얘기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여교사의 그 산후 휴가문제, 그 실태와 그 문제점과 대책, 이렇게 몇가지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

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답변시 먼저 번 제 31회 임시회시에 질의하였던 내용에 대하여도 포함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보충질문 답변은 관계관의 답변후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관계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국장 신재철

(집행석에서)

전번 회기 것을 먼저 답변하나요?

● 의장 김영세

예, 전번 회기걸 먼저 답변하시죠.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전번 회기에 김응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시 오히려 주민이 교육적인 문제로 찬성하고 있지만 통폐합 학교의 유지관리에 애로가 많은 바, 그 관리대책에 대한 본청의 방침은 어떠하며, 또한 폐지

학교의 임대신청서 그 기준과 향후처리 방향은 어떠하나,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역의 학령아동 감소로 인해가지고 지금까지 폐지한 소규모 학교는 모두 80개교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시는 바와 같이 24개교는 매각됐고, 나머지 56개 학교에 대하여는 학생야영장 등 자체 활용이 8개교, 공익단체 등에 사용허가한 것이 19개교, 그 다음에 나머지 29개교는 현재 보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존 관리하고 있는 29개교에 대해서는 건물의 파손 및 화재위험 또는 청소년 비행장소로 이용될 수 있는 그 우려로 인해가지고, 12개학교는 지역주민에게 사택거주 및 학교부지 경작을 조건으로 월 6만원씩 지급을 하는 조건으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17개 학교는 현재 기능직이 사택에 거주 또는 출퇴근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이 노후돼가지고 붕괴위

험이 있는 것은 교사를 철거하고 부지만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지역의 국민 학교는 그 지역주민 또는 독지가의 학교 용지 기증에 의해 설립된 것이 많고, 학교가 지역사회의 집회 또는 문화전달의 중추적역할을 수행하여 온 점을 감안해가지고 매각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매각 여부의 결정은 장기학생수용 계획 및 인구의 이동 전망 교육목적 및 주민복리 사업등에의 재활용 가능성, 당해지역 기업에의 임대 등 재산의 감축이 없는 활용가능성 여부, 그 다음에 지역주민의 정서등을 고려하여 매각여부를 결정하고 있고, 부득이하게 매각을 할 경우는 호화별장이나 위탁시설, 주민협오시설, 부동산 투기 조장 등 사회적 물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용도를 지정해가지고 매각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활용중이거나 향후 사용계획 대상재산 및 인구증가 예상지역은 매각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폐교재산 사용허가시에는 정관 또

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가지고 공
익 목적, 목적 등을 검토하고 현지
주민의견을 존중하여 결정하고 있으
며, 계속 사용을 원할 경우에는 당초
사용목적 위배여부, 또는 관리상태
등을 검토해가지고 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예, 김응복위원님 어떻게 보충질의
더 있으십니까?

(김응복위원 "없습니다."하고 대답)

예,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없으
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관리국장 신재철

두째번으로 질문하신 김응복위원님
의 통폐합대상교의 버스 운영시 기능
직 운전원 임용 희망자간에 경쟁이
심하다고 하는데, 기능직 임용권을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권은 지역교
육장에 위임되어 있으나 교육감이 보
직관리상 인사교류가 필요할 때 전보
를 행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교육청별로 정원증감에
의한 현원의 과부족이 생길 경우, 또
는 장기 근속자의 전출입 희망내신에
의한 인사교류를 교육감이 행하고 있
습니다.

운전원의 경우, 내년도 즉 94년도
청주시 학교업무용 차량의 내용연수
도래로 23명이 감축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운전원을 도내 통
폐합대상학교의 버스 운전원으로 재
배치할 계획이며 운전원 결원이 발생
시에 정원초과인원이 완전 초과될 때
까지 차량운전원 신규채용을 금지토
록 교육부인사관리지침에 따라 취하
고 있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조치
입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어떻게 더 보충질의없으시죠?

● 김응복 위원

교육부 인사관리지침이 나와있습니
까? 이게.

● 관리국장 신재철

교육부에서 인제 지침이 그 차량이
내년도부터 이제 그 기한이 만료된
차량에는 다시 차량을 배치를 하지

않고 그 차량운행비를 3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기재용됐던 운전원은 저희들이 감원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할 신규지정학교에다가 그 운전원을 배치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부득이 저희들이 정원조정상 교육감님이 여기서 인사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장 김영세

또 다른 보충질의없으시죠?

(김응복위원 "없습니다"하고 대답)
예, 다음

● 관리국장 신재철

다음은 이상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원군 살미분교장에 토지 3,000평을 회사한 노철호씨에게 정신적인 보상 차원에서 감사패등을 드릴 수는 없느냐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까지 폐교된 학교는 모두 80개교로서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4개교는 매각되고 나머지 56개교는 자체활용보존하고 있습니다.

폐교재산에 대한 학교용지 기부채

납 현황을 저희들이 살펴보면 31개교에 3만7,757평으로 학교용지를 기부한 분들은 모두 70명입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 전체가 기부한 곳은 3개교가 되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성국민학교 살미분교장의 학교용지 기증자는 노필호씨 외 5명으로 학교용지 2,831㎡, 임야 만7,463㎡이며, 두명은 현재 생존해 계시고 노필호씨 외 3명은 사망 또는 소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은 등기부등본 또는 기부채납서 등 서류로서 확인된 사항이지만 당시 농촌사항으로 미루어 볼 때 서류로서 확인되지 않은 기부자가 불분명한 것도 상당하다고 보며,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기부자에게 감사패 등을 드리는 것은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연구·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이상일위원 되셨죠?

(이상일위원 "예"하고 대답)

예, 수고하셨습니다.

● 관리국장 신재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시죠.

(중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눔)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중등교육국장 박준용입니다.

권혁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94학년도 대입 2차 수능시험결과분석과 두번째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따른 사회과 및 실과에 대한 장학방첩의 대응책은 무엇인가하고 우려하신 데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차 수학능력시험이 예비소집 당일에는 다소 혼란이 있었습시다마는, 시험당일은 아무런 사고없이 무사히 치뤄진데 대해서 여러위원님과 의장님께서 많은 협조와 걱정의 덕분에 무사히 치뤄진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내용 첫번째, 운영상의 차질이라는 말씀이 계셨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운영상의 차질은 예비소

집에 응한 학생들이 수험표를 교부받지 못하고 좌왕우왕했다는 그러한 혼선을 빚은 내용이 어떻게 된거냐하는 질문요지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당일 수험표를 교부받지 못하고 좌왕우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두가지 유형에 의해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첫번째는 1차시험장소와 2차시험장소가 변동된 학생 약간명, 그리고 재수생에서 1차시험장이라는 말과, 1차 예비시험소집장이라는 말에 착각을 일으켜서 잘못 장소를 찾아간 학생 약간명이 있어서 혼선을 빚은 내용입니다.

그 두 유형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 예비소집장소를 "1차시험에 응시한 학생은 1차시험장소가 바로 예비시험장소다"하는 것을 알려주고 "1차 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2차 시험만 응시한 학생은 청주고등학교가 예비소집장소이다"하는 것을 원서접수와 동시에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의 차질이 생긴 것은 키스트(KIST)에서 그 지침을 내리기를 1차 시험장소가 바로 2차 시험장소와 같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고사장 편성을 그렇게 한다는 지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사장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지침을 준 것과는 다르게 된 사실이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주고등학교의 시험장에서 1차 시험본 학생이 2차에 응시를 아니한 약 100명이 있었다 이렇게 가정을 할 때 그 100명을 키스트(KIST)에서 편성할 때에는 제2고사장인 고사장 응시자들을 약 100명을 보충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내용을 키스트(KIST)에서 변동된 학생의 명단이나 또는 사전에 그런 변동된 학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으면 저희들이 확인을 할 텐데, 실무진에서는 전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예비소집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시험장소를 2차 예비소

집장소로 정해서 발표를 했지만은 재학생들은 학교에서 지도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학생들이 1차 시험장소와 1차 예비소집을 했던 4개 소집장소를 착각을 해서 간 학생이 있어서 수험표 교부에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저희들이 알고서 수험표 교부를 받지 못한 학생과 수험표를 전부 도교육청으로 소집회수시켜 가지고 강당에서 교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혼선을 빚게 된 것은 신흥고등학교에서 도교육청의 지시없이 학교에서 임의로 일찍 귀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의 수가 어느 정도 인지도 잘 모르고 그러한 상태가 되어서 상당히 걱정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도교육청에 다 집합을 시켜가지고 교부를 하고 미교부된 것이 약 190매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 이것을 교부하기 위해서 10개 고사장의 교감선생님들을 모셔다가 고사장별로 수험표를 분류를 해가지

고 드리고서 저녁에 개별적으로 전부 연락을 다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야까지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마지막 통화가 안된 학생은 한 10명정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시험당일 날 혼선이 있을까 염려가 되어서 신흥고등학교에 차량을 다섯대를 배치했습니다.

시험당일에 혼선을 빚은 학생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섯대 배정한 가운데에서 예비소집에 바르게 수험표를 받고서도 어떻게 착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온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수송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례를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시험당일은 아무런 하자없이 시험이 치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혼선을 일으킨 실무진에 대해서는 키스트(KIST)에서 암만 그렇게 했더라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미확인

에 대한 책임을 추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지원 장학사 3명과 신흥고등학교의 1명 이렇게 해서 정고처분을 했습니다.

운영상의 차질에 대해서는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적은 문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수분포 및 피드백(feedback) 자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의인데 2차 시험 발표는 12월 20일날 발표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분포는 각 학교의 검토 점검한 결과, 선생님들의 소리에 따르면 1차보다 약간 하향될 그런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능력시험과 전인교육과의 관계, 수학능력시험과 전인교육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고, 권위원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개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수학능력시험은 전인교육차원에서 실시되는 평가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상적인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통해서만이 전인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확신을 하고, 또 이 전인교육에 대한 평가는 바로 수학능력시험에 의해서만이 가장 잘 접근된 평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학능력시험은 바로 전인교육을 평가하는 그런 방법과 일치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번째, 대학 수학능력시험후의 생활지도대책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후에 사실상 학생들은 정신적으로 해이한 감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본 대학시험이 9개 대학밖에는 본고사가 없기 때문에 또한 문제가 가중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탈선을 예방하는 길은 바로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는게 가장 중요한 해결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진학지도를 위해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는 데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정상적인 교육과정운영에 최선을 다해서 생활지도에 문제점을 줄이고자 생각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12월 10일 어제까지가 되겠습니다.

대학 내신성적중에 출석성적이 어제까지 반영되는 걸로 방침이 서있습니다.

따라서 지각·결석·조퇴 이와 같은 지도는 철저히 학교에서 이루어져서 별 문제가 없고 또 지각·결석을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은 학부형과 연계해서 사유를 확인하고 지도하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특별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인교육차원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지역사회인사를 초빙해서 특강을 연다든가 또 독서교실이나 취미교실이나 또는 예절교실같은 것을 운영을 한다든가, 또는 미술

실기대회를 한다든가 독후감발표, 음악발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들의 특기 진작에 전력을 기울이고 전인교육차원에서 충실하게 운영하도록 지도를 하고, 그 실례로서는 이제 오는 18일날은 청주, 청원을 중심으로 해서 졸업발표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평상시와 같은 방법으로 교외생활지도를 강화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난 7일에는 시·군 생활지도 담당장학사 그리고 생활지도 주임을 연석회의를 해서 앞으로의 연말연시에 사고가 없도록 특별지도대책을 협의하고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부단한 지도와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기해서 생활지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지도를 한 바 잘 운영이 되고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섯번째로 "수학능력시험과 보충수업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충수업은 능력별 반편성을 원칙으로 하고, 이것을 준수하도록 지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충수업은 역시 각 교과별로 개념이나 원리나 또는 원칙 이와 같은 일반적인 사항을 깊이있게 지도를 하고, 그리고 학습방법으로서 는 특히 실험실습을 강조하고 또는 토의학습·탐구학습 이와 같은 것을 유도를 하고 창의력이나 사고력을 신장하고, 어떤 문제가 부닥쳤을 때 그 해결능력을 기르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보충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학능력시험과 더 직결되는 학습방법의 하나는 통합교과적인 교수·학습방법을 개발을 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그것은 쉽게 개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한 두번째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따른 사회과 실과의 장학방침 대응은 어떻게 돼있느냐" 하는 질문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미래사회의 적응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저희도에서는 교육의 기본 목표를 "21세기를 주도할 자주 창의·도덕적인 건강한 한국인 육성"으로 설정을 하고 그 구현을 위한 지금 질문하신, 지금 질문하신 사회과 교육과 관련한 장학방침은 첫째가 민주주의의 우월성 이해와 민주시민 자질함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남북관계의 바른 이해와 통일 의지를 심어주는 데에도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질제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질제교육내용으로는 세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절교육으로 기본생활습관지도 도덕성 함양에 노력하고, 경제교육으로 특히 이 쌀개방문제와 아울러서 국제화, 개방화에 대해서는 근검절약하는 습성, 그리고 저축을 생활화하고 특히 국산품을 애용하는 습관을 아주 체질화 하도록 지도를 하고 아울러서 학생을 통해서 학부모들에게 국산품

애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서교육으로 준법정신을 함양시키고, 따라서 우리 선진문화민족의 자긍심을 갖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에 "실과교육에서는 어떤 대응 방침이 있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화, 정보화에 또는 개방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첫째로 노작학습과 컴퓨터교육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교과체제개편을 통해서 기능인양성을 해서 국제경쟁력을 키우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세번째는 산학협동 연계지도를 강화해서 현장실습과 장학금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고계통에는 공동실습소를 운영을 해서 고부가가치의 화훼재배의 기술, 또는 수경재배 이와 같은 것을 지도하고, 공고계통에서 공고생 공동실습소에서는 최첨단의 기능을 신장토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로는 학과 개편을 시대에 맞게 조정을 해서 농업계에는 식품가공과, 농업기계과, 농산물유통과, 그리고 정보처리과를 설치할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업계에서 사무자동화학과 상업디자인학과를 앞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업계에 충복공고를 설치할 하면은 거기에 최첨단학과를 설치할 해서 예를 들어서 금형과나 전자기계과 또는 정보통신과를 설치할 해서 시대에 부응하는 기능인을 양성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학방침을 통해서 모든 학생이 자기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해서 21세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서 자기 실현과 꿈을 키워나가는 데 주력을 하고 세계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으로 이와 같은 장학방침을 계획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저 권혁풍위원장님.

한가지 양해를 구해야겠는데, 이 저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따른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범위가 대단히 넓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완은 사실 지금 질문이나 답변으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받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또 권위원장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위원님도 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런 거 아셔야하기 때문에 우리 전체위원님한테 한번 서면제출을 한번 요구하시면 어떨까,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충질의를 해주시죠.

● 권혁풍 위원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두번째 답변해주신 그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따른 사회과, 실과의 장학방침, 아 이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참 쌀개방을

당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 이유도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하지 못하고 대응책을 강구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에서나마 정치에서 그렇게 했다면 교육은 좀 정신을 차려서 미리 어떠한 사태가 벌어질 것을 예상해서 여기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연구가 필요하단다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건데 상당히 여러가지로 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쌀개방이 뭐 예상치 못하게 참 우리가 잘 되리라고 봤던건데 이제 이렇게 결과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아마 아직은 우리 교육권에서 즉각 수립이 돼있지는 못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실 그대로만 답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과제를 갖다가 연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그 답변을 좀 서류화해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더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 권혁풍 위원
예, 됐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다른 더 보충질의 없으시죠?
(권혁풍위원 "없습니다"하고 대답)
그러면 초등관계.....
(중등교육국장을 향해)
수고하셨습니다.

(초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초등교육국장 김태길입니다.

권혁풍위원님께서 "여교사 산후휴가 조작에 대한 실태는 어떠냐, 문제점이 뭐였느냐, 대책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제가 답변드리는데, 이해를 돕기위해서 조사대상은 언제까지냐, 91년 1월 1일서 93년 10월 현재 그 기간에 출산한 여교사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조사방법은 그 선생님의 재직학교

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학교에 있었느냐, 그 학교에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학교가 299학교 중학교 88, 고등학교 52, 특수학교 2 이래서 교육기관으로서는 441개 전체 학교에서 출산한 여교사를 전부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수로는 교사가 1,187명, 그중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혐의점이 있다하는 선생님이 158명입니다

나머지 1,029명은 법령대로 준수해서 성실히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158명중에서 징계가 7명, 교사가 5명, 교장·교감 관리자 2명해서 징계조치할 사람이 7명입니다.

그럼 나머지 161명 아, 151명은 경고조치를 할 이런 예정으로 있는데 이 경고조치는 저희가 지시를 내리기를 "12월 5일서 어제까지, 12월 10일까지 시·군교육청의 교육장이 경고조치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고 징계대상자 7명은 지금 시·군교육장이 징계의결요구 신청중에 있어서 금

년말까지 징계조치를 완료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출산휴가를 조작을 했느냐, 그 유형이 뭐냐" 이 시간관계상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가만있어봐요.

(권혁풍위원을 향해)

그 관계양해하시겠습니까?

● 권혁풍 위원

예.

● 의장 김영세

예, 말씀하세요.

●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그러면 그 징계대상자 교사가 5명인데 허위진단서작성이 4명입니다.

진단서 변조가 1명입니다.

그리고 두명은 관리자 두명입니다.

그래서 징계대상은 7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발생이 됐느냐, 그 문제점이 뭐냐" 그 원인을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선 여교사들이 이 관계법령

또는 관계규정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었느냐.

그럼 그 관계규정이라든가 법령이 뭐냐하면은 시간이 좀 갑니다마는 60일이내에 휴가를 받도록 돼있는데, 두달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 날짜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그러한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었습니까.

그건 경고조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런 발생원인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점이 났느냐" 임시교사 부당임용에 따른 예산이 좀 낭비가 됐습니다.

또 수업결손이 발생이 됐고, 대책은 여교사 및 관리 및 감독자에 대한 거기에 대한 철저한 이해, 철저한 지시, 지휘·감독 이걸 추구를 했고, 향후 이러한 재발방지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하겠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생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권혁풍위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권혁풍 위원

예, 사실은 됐는데.....

아, 국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 먼저 국장님 중등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중등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수능시험문제를 직접 검토를 자세히 못해봤는데, 거기에도 예체능문제가 다 포함이 돼있습니까?

수능시험에.....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집행석에서)

대입수능문제 말씀입니까?

● 권혁풍 위원

예, 대입수능시험에.....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대입은 없습니다.

● 권혁풍 위원

예능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예.

● 권혁풍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걸 테스트하나요?

예능관계는?

● 중등교육국장 박준용

내신성적으로 합니다.

● 권혁풍 위원

내신성적으로만? 다른 건 없구요.

그러면 뭐 통합교과라고 말로만 그렇지 사실은 그것도 아직 접근이 안 됐구만요.

그리고 또 부탁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에 보충수업을 실험실습, 토의·탐구학습으로 하고 문제해결 학습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장에서는 아마 그게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정규교과시간에는 진도가 바빠서 참 그대로 종전의 방법을 그대로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보충수업시간에만은 참 지금 말씀하신 실험실습, 혹은 사회과에서의 토의, 국어과의 토의, 혹은 탐구학습, 문제해결학습 이런 것이 정말로 제대로 돼야 이게 보충수업의 역할로서 타당하지 않은가, 그런 식으로 수업을 좀 전개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다 되셨습니까?

(권혁풍위원 "예"하고 대답)

예, 뭐 더 보충질문하실.....

(이재희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 이재희 위원

한 말씀만 드릴려고 하는데.....

● 의장 김영세

이건 이의입니까?

(이재희위원 "예"하고 대답)

뭐 대답을 요하는 거라면 이 다음번에 해서.....

● 이재희 위원

간단히 될 거 같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간단한 거라면 하십시오.

● 이재희 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지만, 우리 교육가족 모두가 제 나름에는 생각을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 교육위원들 북부 3개시군 출신들이 어제 제천의 하소국민학교가 청 동현국민학교 학교부지를 좀 시찰

을 했는데, 좀 아쉬운 게 있기 때문에 사후에는 좀 참고로 하십사하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학교부지가 설정되기까지 과정은 어떤지, 또 제천교육청 관리과에 문의를 해보니까 이 도시계획을 그 만들때 교육청직원이 참여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도청이라든지 관계관과 협의를 해가지고 지역도시 발전에는 교육청직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협조해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하소국민학교 이 부지를 좀 봤는데, 요즘에는 학교부지를 뭐 우리가 선택 여지도 없이 그냥 주어지는 걸 하고는 있는데, 대개 이 아파트가 땅금이싼 걸 이렇게 취득하다보니까 간선도로 하고 먼 산지나 이런 길을 이렇게 취해서 이렇게 아파트짓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안의 학생들은 통학의 문제가 별로 없는데, 아파트단지 이외의 학생들은 간선도로에서 아파트까지 진입로가 제대로 되어 있질 않기 때문에 통학의 위험성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의 선정에, 위치 선정에는 이런 것도 강력히 우리가 좀 주장을 해주십소서 하는 말씀과, 그 다음에 면적이 3,200㎡ 굉장히 협소합니다.

하소국민학교도 36학급규모에 3,200㎡ 인데, 이 적은 평수면 정사각형이나 직각사각형이 딱 떨어져야 되는데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 건데, 정사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수는 무용지물 평수가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토개공과 이 학교부지로 설정이 되고 거기 아주 기반공사를 할 때, 관계관들이 좀 협조할 용의는 없느냐, 정사각형으로 고칠 수 있도록. 또 하나 하소학교는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학교위치로서는 문제가 없는데, 이쪽 우편에는 산을 절개한 지역이고 후편과 옆편은 높기 때문에 한 2-3m 이렇게 축대를 쌓았습니다.

그러면 앞에 정문의외의 어떤 후문 계획도 세워줘야 되는데 현재 공사과정으론 그게 전연 고려가 안됐다 이겁니다.

이 버스라든지 비행기에도 비상구가 있는데 이 36클래스(class)되는 이런 학교는 비상구계획도 좀 사전에 해두는 것이 차후에 공사비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답변해 주실 건 가능하면은 설립과정이 우리가 좀 힘을 줘서 어떻게 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길은 없는지, 그 좀 몇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안되면 다음에 하세요

● 의장 김영세

지금 저 이재회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비단 제천문제가 아니라 이 청주시의 학교부지선정 때도 우리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그 학교용지 시설을 설치구역을 설정할 적에 우리가 사전 그 교섭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건 이미 지적된 바가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저 도나 이 저 청주시에는 우리 교육청판계공무원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도내 각 시군은 교육청에서 그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 있는지 어떤지 이것도 좀 감안해서 지금 답변하실 내용은

지금 답변하시고, 지금 답변하시지 못할 내용이 있으면 차기에 하셔도 좋습니다.

그저 선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눔)

●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지금 이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 지역의 지역교육청에 관여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같으면 도도시 계획위원회에 제가 들어가 있고 위원으로, 청주시는 본래 방대하기 때문에 청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 행정과장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도시계획위원으로 안들어가 있으면 그 지역의 군수나 이런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이 학교가 대부분 설정이 되고 특히 시는 그렇습니다. 시지역은.

제가 알기론 아마 제천도 아마 그 관리과장이 들어가 있는 모양인데 얘기듣기로는 가서 아마 협의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기서 알아서

그 지역의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많이 활동을 하셔야지 저희가 여기에서도 시지역이나 이런데까지 그 연계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일을 추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건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희 위원

아니, 어제 그 질문에는 관리과에서 참여가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앞으로 지역교육장하고 시장하고 협의가 되겠지만 우선 교육감과 도지사간에도 좀 지역의 그 개발위원회에는 교육청직원이 참여하도록 좀 우선 상부지역에서 좀 협의를 해주시는 것이.....

● 관리국장 신재철

글쎄 그거는 저희들이 여기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구요.

도시계획위원, 예를 들어 제천시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시장이 위원들을 위촉하거든요.

그것을 여기서 그걸 일방적으로 넘어라 이렇게 하기는, 협조, 물론 저희들이 협조는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좀 해당오 하는 것은 하겠습니다마는 저쪽에서 그 지역의 교육청에서 그건 조금 저 관여를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이 현안문제를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요, 지금 우선 그걸 확인해보세요.

도내에서, 시군에서 이 교육청직원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못 들어가 있는 지역이 어디어던가.

그래서 물론 그 당해 시장과 교섭을 할 일이지만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관리국장 신재철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예, 그러면 되시겠습니까?

(이재희위원 댔다고 말함)

그럼 이상으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기타 말씀하실 안전 있습니까 말씀없으시죠?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그러면 오늘로서 '93년도 회기 60일의 대단원을 이제 마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면서 저희들이 느꼈던 여러가지 감회와 또 앞으로의 당부를 위해서 제가 한 말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9. 폐회사

(11시 30분)

● 의장 김영세

다사다난했던 계유년 한해도 저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여러분, 그리고 정인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올 한해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지난 한해 14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60일동안 40건의 의안과 63건의 일반안전 등 총 103건을 처리하면서, 충청북도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5건을

원안 의결하였고, '94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5건을 수정의결하였으며, 교육행정 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사항 27건 등 74건을 조치토록 하였고, 5회에 걸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지적·보완토록 하는 등 본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21세기를 향한 충북교육 발전계획안 등 8회에 걸쳐 도교육청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으며, 의안심의와 관련된 25개소의 현장을 방문하였고, 미국 등 해외연수를 통한 교육자치제도의 비교와 자체세미나를 통한 연찬 등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도의회와의 이중의결이라는 법규적 모순은 개정되지 않고 있고, 특히 이중의결로 인한 최근 일련의 불협화음은 매우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위상과 집행기관의 시간낭비, 인력낭비, 사업지연 등 심각한 문제는 기필코 개선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같이 조속한 교육자치법

<p>의 개정에 더욱 힘써 교육자치가 제대로 발전될 수 있도록 결의를 새롭게 다져야 하겠습니다.</p> <p>이제 곧 갑술년 새해아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p> <p>새해에는 우리 교육위원은 물론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에서도 본도 교육의 획기적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시고, 또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p>	<p>리면서 제3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p> <p>감사합니다.</p> <p>그러면 이것으로 제32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p> <p>이상으로 제3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 폐회를 선포합니다.</p> <p>(11시 32분 폐회)</p>
---	--

- 출석위원 : 11명
 의장 김영세, 부의장 이상일, 이재희, 홍신희, 김응복, 이근수, 김광수, 박병해, 김사수, 권혁풍, 장충호.
- 출석공무원 : 16명
 부교육감 박동기,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관리국장 신재철, 공보담당관 정금옥, 기획감사담당관 신택희,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초등장학과장 김학목, 초등교직과장 김재성, 중등교직과장 임순재, 과학기술과장 정기우, 사회교육체육과장 이광용,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정헌동, 시설과장 박성근.
- 충청북도고등학교선발고사주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학군설정에관한 조례폐지조례안 : 별첨2
-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별첨3

-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안
: 별첨4
-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별첨7
-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제30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정기회 본
회의회의록 별첨6과 별책부록 참조

(별첨 1)

議 事 日 程 (案)

第 32 回 忠 清 北 道 教 育 委 員 會 (臨 時 會)

1993. 12. 9 - 12.11 (3일간)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93.12.9(목) 11:00	※ 개회식 【 제1차 본회의 개의 】 1. 제3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충청북도고등학교선발고사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학군설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 4.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 5.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안 제안설명 6. '95학년도 국·중학교 설립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7. 고동국민학교 이전계획안 제안설명 8.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제안설명 【 제1차 본회의 산회 】	회 기 12.9 - 12.11. (3일간)
12.10(금)	【 본회의 휴회 】 ※ 의안관련 현장방문	
12.11(토) 11:00	【 제2차 본회의 개의 】 1. 충청북도고등학교선발고사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학군설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결 2.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결 3.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안 의결	

議 事 日 程 (案)

第 32 回 忠 清 北 道 教 育 委 員 會 (臨 時 會)

1993. 12. 9 - 12.11 (3일간)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p>4.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결</p> <p>5.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p> <p>6.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p> <p>7. 기타안건 처리</p> <p>【 제2차 본회의 산회 】</p> <p>※ 폐 회</p>	

(별첨 2)

의안 번호	제 32-3 호
의결년월일	1993. 12 . . (제 32 회)

충청북도고등학교선발고사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학군설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3. 12. / .

충청북도고등학교선발고사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학군설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3. 12. /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의안 번호	32-7
----------	------

□ 폐지사유

조례로 제정 시행토록 되었던 고등학교 선발고사 추첨 배정 입학제도 적용지역의 학군 설정에 관한 사항을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고시하도록 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4004호, '93. 11. 13)이 개정됨으로써 본 조례를 폐지하여 행정의 간소화 및 능률화를 도모하고자 함

□ 폐지근거

○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8 (후기고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제2항

□ 조례안 : 덧붙임

□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예산상황 : 해당사항 없음

충청북도고등학교선발고사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학군설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고등학교선발고사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학군설정에관한조례 (충청북도조례 제1891호, 1991. 3. 25)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

관계법령 발췌서 (교육법시행령 : 대통령령 제14004호. 1993. 11. 13)

제112조의 8 (후기고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군은 시·도별로 학교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참작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별 첨 3)

의안 번호	제 32-2 호
의결년월일	1993. 12. . (제 32 회)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3. 12. / .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 번	안 호	32-2
--------	--------	------

제출년월일 : 1993. 12 . /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폐지사유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와 입학할 중학교의 추천방법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04호. '93.11.13.)이 개정됨으로써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폐지근거

- 교육법시행령 제69조(입학 등의 허가) 제5항

□ 조 례 안 : 덧붙임

□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덧붙임
- 예 산 상 황 : 해당사항 없음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충청북도 조례 제2010호. 1992.11.27.)

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

관계법령 발췌서 (교육법시행령 : 대통령령 제14004호. 1993.11.13.)

- o 제69조 (입학 등의 허가) ③중학교의 입학지원자에 대하여는 지역별, 학교군별로 추첨에 의하여 그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다만,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에는 중학구를 설정하여 그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며, 지체부자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군내의 학교중 특정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고, 체육특기자에 대하여는 당해 교육장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3퍼센트 범위안에서 입학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은 교육장이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정하여 고시하고, 체육특기자의 지정·입학방법 및 그 절차와 지체부자유자의 인정방법은 교육장이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별첨 4)

의안 번호	제 321 호
의결년월일	1993.12. (제 32 회)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3.12.1.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및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안

의 번	안 호	32-1
--------	--------	------

제출년월일 : 1993. 12. /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제정사유

교육법시행령 제69조 제5항 및 제112조의8 제2항(대통령령 제14004호, '93.11.13)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본 고시안을 제정하여 행정의 간소화 및 능률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 별표 1과 같음
- 중학교 학교군 추천방법 :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함
-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 : 단일 학교군

□ 제안근거

- 교육법시행령 제69조 제5항 및 제112조의 8 제2항

□ 고 시 안 : 덧붙임

□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중학구) 및 청주시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관한고시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충청북도의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과 청주시 후기고등학교학교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군 및 중학구) ①충청북도 중학교의 지역별 학교군 및 중학구는 별표1과 같다.

②청주시 후기고등학교의 학교군은 단일 학교군으로 한다.

제3조(추첨방법) 중학교 학교군내의 추첨방법은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하되, 기타 추첨에 필요한 사항은 매년 중학교 진학업무 추진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제4조(학교군내 배정의 예외) 중학교 입학지원자의 통학편의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희망자에 한하여 인근학교에 선배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조 제1항의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중 변경된 다음 각호의 사항은 199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1. 청주시 제1학교군에 남성중학교와 청주시 성화개신죽림동 18-25통, 제2학교군에 울량중학교, 제3학교군에 청주시 성화개신죽림동 26통.
2. 충주시 학교군에 충주중앙중학교.
3. 괴산군 장연중학구인 괴산군 장연면 조곡리는 목도중학구와 공동학구.
4. 영동군 용문중학구인 옥천군 청성면 조천리, 묘금리(용동), 양저리는 옥천중학구와 공동학구.
5. 옥천군 청산중학구인 옥천군 청성면 삼남리는 옥천중학구와 공동학구.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가. 학교군 및 중학구별 일람표

시군별	학교군(구)	중학교명	학 군 (구) 소 속 지 역		비 고
			지역명	해 당 지 역	
청주시	청주시 제1학교군	청주시 남동중학교 청주시 광역중학교 청주시 서문중학교 청주시 중앙중학교 청주시 인성중학교 청주시 신안중학교 청주시 일평중학교	청주시	문화북1가동, 남2가동, 서문남1가동, 서문동, 남주동, 석교동, 탑대성동, 모충동, 사직제2동, 영운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용암용정방서동, 사창동(1-6, 11-19, 23, 25-28, 39-41, 46통), 상화개신죽림동(1, 2, 4, 6-12, 18-25통), 산미분장동, 수곡동	
	청원군면	송암리, 효촌리, 쌍수리, 신송리, 가중리, 가산리, 화당리, 고은리	남이면	팔봉리, 석실리, 석판리, 가마리, 양촌리, 가좌리, 대련리, 척북리, 사동리, 척산리, 수대리, 외천리, 문동리, 구암리, 상발리	
	낭성면	삼산리, 현암리, 갈산리, 무성리, 인경리(마전, 인경)	가덕면	상대리	
			문의면	등동리(위등골)	
청주시	청주시 제2학교군	청주시 대성중학교 청주시 양성중학교 청주시 대보중학교	청주시	영동북2가3가동, 사직제1동, 운천신봉동, 수동, 우암동, 강서제2동, 사창동(8-10, 20-22, 31-35, 38, 42-45통),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울량사천동, 봉명제1동(18-20, 22, 24통 제외), 봉명제2송정동(1, 2통 제외), 오근장동	
	청원군면	목방리, 구성리, 국동리, 원통리(숲안, 청애원, 통천), 은곡리1구			
청주시	청주시 제3학교군	서원중학교 충북대속중학교 충북대속중학교	청주시	강서제1동(12, 26통 제외), 북대제1동, 가경북대제2동, 상화개신죽림동(3, 5, 13-17, 26통), 봉명제1동(18-20, 22, 24통), 봉명제2송정동(1, 2통), 사창동(7, 24, 29, 30, 36, 37, 47통)	
	청원군면	연정리			
충주시	충주교시군	충주중앙중학교 충주미충중학교 충주여중학교	충주시	전지역	
			충원군면	본리, 완오리, 검단리, 장성리, 만정리, 두정리, 탄옹리, 매현리, 문주리	
			가금면	누암리, 창동리	

시군별	학교군(구)	중학교명	학군(구) 소속 지역		비 고
			지역명	해 당 지 역	
춘주시	중학 주교 시군	충예성여 주중 충충중 앙 주중	중원군 살미면 동량면	전지역 화암리, 서운리	
제천시	제학 천교 시군	제천동제천여 제천제천여 의림여중	제천시 제천군 봉양면 금성면 청풍면 송학면 단양군 매포읍	전지역(영천1동10통4반, 11통3반제외) 미당리, 명도리(1-5반) 활산리, 사곡리, 진리, 위림리, 월림리, 양화리, 동막리, 대장리, 구룡리, 적덕리 중전리, 포천리, 월굴리(6반) 장선리, 부산리, 황석리 도학2리, 무도리 삼곡리, 고양리, 가평리, 영천리, 김산리	무도1, 2리: 송 학중학구와 공동학구
청원군	한국교원대 속미호중학구	한대미 교부호 원속중	청주시 청원군 강내면 강외면 옥산면	강서 제1동(12, 26통) 학천리, 사인리, 월곡리, 석화리, 탑연리 부탄리, 다락리, 황탄리, 태성리, 궁현리 산단리, 사곡리 연제리, 만수리, 상정리, 호계리, 쌍청리 궁평리, 궁북리, 오송리, 청중리, 봉산리 동평리, 서평리, 상봉리, 심중리 환희리(송천), 덕촌리 3구	정중리, 봉산 리, 동평리, 서 리, 궁북리, 중 평리, 양북리, 중 상리, 조치원중 리: 조치원중 학구와 공동 학구 덕촌리3구: 옥 산중학구와 공동학구
	미원중학구	미원중	청원군 미원면 낭성면	전지역(금관리2구 및 어암리중 쇠바 우 제외) 관정리, 추정리, 호정리, 지산리, 이목리 귀래리, 문박리, 인경리(마전, 인경 제 외)	대덕리, 운교 리, 구방리, 기 리: 청천중 리: 청천중 학구와 공동 학구

시군별	학교군(구)	중학교명	학 구 (구) 수 속 지 역		비 고	
			지역명	해 당 지 역		
청원군	문의중학구	문 의 중	청원군 문의면	전지역(등동리중 위등골 제외)		
			가덕면 현도면	국전리,삼항리,노현리 죽암리(탑동)		
	부강중학구	부 강 중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등곡리,부강리,문곡리,외천리 행산리,산수리,노호리		
			현도면	상삼리		
			강내면	저산리		
			남이면	구미리,갈원리,비룡리,산막리		
		충청남도 금남면	부용리			
오창중학구	오 창 중	청원군 오창면	신평리,중신리,농소리,탑리,각리, 기암리,석우리,상평리,가곡리,송대리 구룡리,양청리,주성리,창리,과정리, 도암리,학소리,성산리,복현리,장대리 양지리,모정리,일신리,유리,화산리, 여천리,원리,후기리,두룡리,가좌리, 용두리,화산리,성재리(2구 방화골, 3구 강정 제외),백현리(백현부락 제 외)			
					북일면	입상리
					북이면	화상리 2구
					진천군 문백면	봉죽리,계산리,도하리,은탄리,옥성리 (파재 제외)
		충청남도 진천군 문백면	화덕리			
내수중학구	내 수 중	청원군 북일면	입동리,신안리,내수리,은곡리(1구 제 외),마산리,도원리,풍정리,덕암리, 세교리,비상리,형동리,비중리,저곡리, 우산리,초정리,학평리,원통리(청애원 숲안,통천 제외)			

시군별	학교군(구)	중학교명	학군(구) 소속 지역		비 고
			지역명	해 당 지 역	
청원군	내수중학구	내 수 중	청원군 북이면	화상리1구, 석성리, 화하리, 내둔리, 옹계리, 대울리, 장양리, 현암리, 신대리, 신기리, 장재리, 금암리, 토성리, 서당리, 대길리, 부연리, 영하리, 석하리, 신암리, 호명리	
	가덕중학구	가 덕 중	청원군 가덕면	노동리, 인차리, 계산리, 상야리, 한계리, 금거리, 내암리, 병암리, 시동리, 수곡리, 행정리, 청룡리	
			남일면	두산리, 황청리, 문주리, 은행리	
	현도중학구	현 도 중	청원군 현도면	죽전리, 중삼리, 중척리, 시목리, 우록리, 선동리, 시동리, 양지리, 매봉리, 달계리, 죽암리 (탑동 제외)	
옥산중학구	옥 산 중	청원군 옥산면	신촌리, 덕촌리, 오산리, 환희리 (송천 제외), 가락리, 동림리, 국사리, 금계리, 수락리, 사정리, 장남리, 호죽리	덕촌리3구:미 호중학구와 공동학구	
오창면	백현리(백현부락)				
보은군	보은중학구	보 은 중 보 은 여 중	보은군 보은읍	전지역	
			외속리 면	장재리, 오창리, 구인리	
			탄부면	평각리, 사직리, 매화리, 고승리, 장암리2구	
			수한면	전지역(노성리 제외)	
			내북면	서지리, 두평리	
			산외면	봉계리, 아시리, 문암리, 구티리, 길탕리, 산대리, 오대리, 탁주리, 동화리, 백석리, 원평리, 장갑리, 대원리, 신정리	
			삼승면	둔덕리, 선곡리, 송죽리, 우진리	
			옥천군 안내면	방하목리(삼신정)	
경북군 상주군 화북면	운흥리, 증벌리				

시군별	학교군(구)	중학교명	학 군 (구) 소 속 지 역		비 고
			지역명	해 당 지 역	
보은군	보덕중학구	보 덕 중	보은군 마로면	전지역	
			탄부면	상창리, 입한리, 하창리, 벽지리, 덕동리 구암리, 성지리, 대양리, 장암리1구	
			외속리 면	황곡리, 장내리, 하계리, 봉비리, 불목리 서원리	
원남중학구	원 남 중	보은군 삼승면	서원리, 탄금리, 상가리, 달산리, 천남리 내망리, 원남리		
		옥천군 청상면	능월리, 도장리, 대안리, 화성리(소화 등)		
		안내면	오덕리		
		청산면	만월리(다래실골)		
회인중학구	회 인 중	보은군 회북면	쌍암리, 신문리, 오동리, 용촌리, 고석리 갈티리, 중앙리, 부수리, 애곡리, 늘곡리 용곡리, 죽암리, 건천리, 송평리, 신대리		
		회남면	남대문리, 거교리, 신추리, 금곡리, 조곡리, 신곡리, 분저리, 판장리(늘티 제외), 은운리(을미기)		
속리중학구	속 리 중	보은군 내속리 면	전지역		
내북중학구	내 북 중	보은군 내북면	도원리, 동산리, 화전리, 엄둔리, 법주리 봉황리, 성암리, 창리, 대안리, 아곡리, 용수리, 세촌리, 성티리, 적음리, 이원리 신궁리, 상궁리, 하궁리		
		산외면	가교리, 어은리, 이식리, 중티리		
옥천군	옥천중학구	옥 천 중 옥 천 여 중	옥천군 옥천읍	전지역	
			군서면	전지역	
			군북면	자모리, 이백리, 지오리, 환평리, 증약리 추소리, 구건리, 소정리, 석호리, 이평리 (공국제외), 막지리, 옹호리(방개제외)	
			안내면	답양리	

시군별	학교군(구)	중학교명	학 군 (구) 소 속 지 역		비 고
			지역명	해 당 지 역	
옥천군	옥천중학구	옥천중 옥천여중	동이면	남곡리, 석탄리, 청마리(갈마골 제외), 지양리, 우산리, 조령리	동이면청마리 (갈마골제외) 우산리, 조령합 리, 청성면합 금리(세보루 제외), 고당리 :동이중학구 와 공동학구
			청성면	합금리(세보루 제외), 고당리, 조천리, 묘금리(용동), 양저리, 삼남리	
	이원중학구	이원중	옥천군 이원면	전지역	
			영동군 심천면	마곡리, 구탄리, 장동리	
	청산중학구	청산중	옥천군 청산면	전지역(만월리중 다래실골 제외)	
		청성면	삼남리, 궁촌리, 소서리, 장수리, 구음리 산계리, 거포리, 장연리, 화성리(소화동 제외)	삼남리:옥천 중학구와 공동학구	
안내중학구	안내중	옥천군 안내면	안내면	용촌리, 월외리, 방하목리, 도울리, 서대 리, 동대리, 도이리, 정방리, 인포리, 현 리, 장계리	
			동이면	청마리(갈마골)	
			안남면	전지역	
			청성면	합금리(세보루)	
			보은군 회남면	판장리(늘티), 은운리(진주골, 지장골, 지경말	
		수한면	노성리		
동이중학구	동이중	옥천군 동이면	세산리, 적하리, 금암리, 우산리, 조령리 평산리, 지양리, 청마리(갈마골 제외)	동이면우산리 조령리, 청마 리(갈마골 제	

시군별	학교군(구)	중학교명	학군(구) 소속 지역		비 고
			지역명	해 당 지 역	
옥천군	동이중학구	동 이 중	옥천군 청성면	고당리, 합금리(세보루 제외)	외), 청성면고 당리, 합금리 (세보루 제외) : 옥천중학구 와 공동중학구
영동군	영동초학구	영동신중	영동군 영동읍	전지역	시금리(광탄, 시금골), 심천 중학구와 공 동학구
			양강면	전지역(목정리 제외)	
			용산면	시금리	
			용화면	자계리	
	용문중학구	용 문 중	영동군 용산면	전지역(시금리 제외)	조천리, 묘금리(용동), 양저리 (용동), 옥천 중학구와 공 동학구
옥천군 청성면	조천리, 묘금리(용동), 양저리				
황간중학구	황 간 중	영동군 황간면	전지역		
		매곡면	전지역		
학산중학구	학 산 중	영동군 학산면	전지역		
		양강면	목정리		
추풍령중학구	추풍령중	영동군 추풍령면	영동군 추풍령면	전지역	광천리: 김천 중학구과 공동학구
			경남도 봉산면	광천리	
			경상도 주요면	반계리(반징개)	

시군별	학교군(구)	중학교명	학 군 (구) 소 속 지 역		비 고
			지역명	해 당 지 역	
영동군	상촌중학구	상 촌 중	영동군면 상촌면	전지역	
	정수중학구	정 수 중	영동군면 양산면	전지역	
	심천중학구	심 천 중	영동군면 심천면 용산면 옥천군면 청성면	길현리, 단전리, 용당리, 심천리, 초강리 고당리, 각계리, 약목리, 금정리, 기호리 명천리 시금리(광탄, 시금골) 요금리(요정, 요동)	시금리(광탄, 동 시금골) : 영동 공립중학교 공립중학구
진천군	진천중학구	진 천 중 진천여중	진천군면 진천읍 문백면 초평면 이월면 덕산면	전지역(건승리중 두건이 제외) 문덕리, 태락리, 옥성리(타재), 사양리, 평산리, 장월리, 구곡리 중석리, 화산리, 용정리, 영구리, 금곡리 신통리(삼선, 신평, 용동) 사곡리, 동성리, 삼룡리 인산리, 산수리	
	덕산중학구	덕 산 중	진천군면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음성군면 맹동면 대소면	신척리, 한천리, 합목리, 용몽리, 옥동리 석장리, 두촌리, 기전리, 화상리, 구산리 신통리(상통), 오갑리 미장리(상촌) 용촌리, 신돈리, 마신리, 본성리, 쌍정리 두성리, 군자리, 통동리, 봉현리2구 수태리	수태리:대소 중학구와 공 립중학구
	백곡중학구	백 곡 중	진천군면 진천읍 백곡면	건승리(두건이) 전지역	

시군별	학교군(구)	중학교명	학군(구) 소속 지역		비 고
			지역명	해 당 지 역	
진천군	광혜원구	광혜원중	진천군 만승면	구암리, 실원리, 회죽리, 광혜원리, 월성리, 금곡리	
			음성군 삼성면	상곡리, 청룡리	
			대소면	대풍리(중방골), 내산리(방울미, 살천)	
	이월중학구	이 월 중	진천군 이월면	신계리, 송림리, 내촌리, 사당리, 장양리, 신월리, 미장리(상촌 제외), 노원리, 중산리	
			만승면	죽현리	
괴산군	괴산 중학교 읍구	괴산 중학교 읍구	괴산군 증평읍	전지역	
			도안면	전지역	
			사리면	노송리, 중흥리, 사담리, 방축리, 소매리, 수암리	
			진천군 조평면	은암리, 연담리, 진암리, 용산리, 용기리	
			청원군 북이면	옥수리, 추학리, 내추리, 송정리, 금대리, 광암리	
			음성군 원남면	문암리	
괴산중학구	괴 산 중	괴산군 괴산읍	전지역		
		문광면	전지역		
		청천면	운교리, 지촌리, 거봉리, 덕평리, 대전리, 여사왕리		
		사리면	화산리, 이곡리		
괴산 중학 북구	괴산북중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2구, 3구), 서부리2구, 정용리, 대덕리, 제월리, 신기리, 신항리, 사창리, 능촌리		
		소수면	수리, 입암리, 아성리, 고마리, 소암리, 용촌리		

시군별	학교군(구)	중학교명	학군(구) 소속 지역		비 고	
			지역명	해 당 지 역		
괴산군	송면중학구	송 면 중	괴산군 청천면	관평리, 송면리, 이평리, 삼승리, 사기막리(용추동 제외)	입석리: 경북 화북중학구 공동학구	
			칠성면	쌍곡리(제수리)		
			경북 상주군 화북면	입석리		
			괴산군 청천면	지경리, 부성리, 삼락리, 월문리, 무릉리, 금평리, 대티리, 도원리, 후영리, 화양리, 청천리, 고성리, 선평리, 후평리, 가평리, 귀만리, 신월리, 신평단리, 상신리, 사담리, 사기막리(용추동)		대덕리, 운교리, 구방리, 미원중학구와 공동학구
			청안면	부흥리		
청원군 미원면	금관리(금관2구), 어암리(쇠바우), 대덕리, 운교리, 기암리, 구방리					
연풍중학구	연 풍 중	괴산군 연풍면	전지역			
청안중학구	청 안 중	괴산군 청안면	전지역(부흥리 제외)			
목도중학구	목 도 중	괴산군 불정면	전지역	이담리(대성동) 구월리(주월리, 울리), 오창리(하유창) 조곡리: 장연중학구와 공동학구		
		감물면	이담리, 구월리(주월리, 울리), 오창리(하유창)			
		장연면	조곡리			
장연중학구	장 연 중	괴산군 장연면	광진리, 추절리, 오가리, 송덕리(복거리 제외), 방곡리(감나무골, 소년골 제외), 조곡리	조곡리: 목도중학구와 공동학구		

시군별	학교군(구)	중학교명	학 군 (구) 소 속 지 역		비 고
			지역명	해 당 지 역	
괴산군	칠성중학교	칠 성 중	괴산군 칠성면	전지역(쌍곡리중 제수리 제외)	
			장연면	장암리, 태성리, 증덕리(복거리)	
	감물중학교	감 물 중	괴산군 감물면	오성리, 광천리, 백양리, 매전리, 구월리 (곤동, 주월리, 울리), 오창리(하유창 제외), 이담리(대상동)	구월리(주월 리, 울리), 이 담리(대상동) : 목도중학교 와 공동학 구
			장연면	방곡리(감나무골, 소년골)	
음성군	이화여자 고등학교 이화여자 고등학교	이화여자 고등학교	음성군 음성읍	전지역(사정리 제외)	
			소이면	전지역	
			원남면	전지역(문암리 제외)	
			괴산군 소수면	옥현리, 길선리	
			증원군 신니면	광월리(광벌)	
감곡중학교 매곡여자 중학교	감 곡 중 매곡여중	음성군 감곡면	전지역	성신1,2리: 점 동중학교와 공동중학교(여)	
		생곡면	송곡리 2구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뇌곡리, 원부리, 성신1,2리		
		이천군 율면	총곡리(포기실)		
생곡중학교	생 곡 중	음성군 생곡면	임곡리, 팔성리, 관성리, 병암리, 방축리 차평리, 신양리, 차곡리, 생리, 오생리, 송곡리 1구, 도신리(가진개제외)		
무곡중학교	무 곡 중	음성군 금왕읍	전지역(호산리 제외)		
		음성읍	사정리		

시군별	학교군(구)	중학교명	학군(구) 소속 지역		비 고
			지역명	해 당 지 역	
음성군	무극중학구	무 극 중	음성군 생극면	도신리(가진개)	
			맹동면	인곡리, 봉현리 1구	
	대소중학구	대 소 중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오산리, 삼호리, 태생리, 삼정미 미곡리, 성본리, 소석리, 부윤리, 수태리 대풍리(주방골 제외), 내산리(방울마, 살천 제외)	
삼성중학구	삼 성 중	음성군 삼성면	대사리, 양덕리, 용성리, 대야리, 덕정리 선정리, 천평리, 대정리, 용대리, 능산리		
금왕읍	호산리 2구				
중원군	주덕중학구	주 덕 중	중원군 주덕면	전지역(당우리 중 석우 제외)	화안리: 신니공 중학구와 중학구
			신니면	견학리(행촌), 화안리	
			이류면	영평리, 대소리, 금곡리	
	신니중학구	신 니 중	중원군 신니면	모남리, 문락리, 대화리, 문승리, 송암리 원평리, 선당리, 화석리, 신청리, 용원리 마수리, 광월리(수월), 견학리(행촌), 화안리	화안리: 주덕공 중학구와 중학구
			주덕면	당우리(석우)	
	노은중학구	노 은 중	중원군 노은면	전지역	
			가금면	하구암리(상구)	
수안보중 학구	수안보중	중원군 상모면	전지역		
양성중학구	양 성 중	중원군 양성면	전지역		단암리, 중전 리(중방곡), 강천리(서음) :강원도 부론 중학구와 중학구
산척중학구	산 척 중	중원군 산척면	송강리, 영덕리, 명서리, 석천리(명암)		

시군별	학교군(구)	중학교명	학군(구) 소속 지역		비 고
			지역명	해 당 지 역	
중원군	신명중학구	신 명 중	중원군 청정면 소태면	전지역 북탄리, 오양리, 아동리, 구룡리, 동막리 중창리, 양촌리, 주치리(하남, 은대), 덕은리	덕은리, 가음리, 원도부, 원학구와 이양중학구
	중원중학구	중 원 중	중원군 금기면 동량면	전지역 대전리, 용교리, 조동리, 손동리, 하천리 지흥리	
	가금중학구	가 금 중	중원군 가금면	봉황리, 가흥리, 장천리, 용전리, 탑평리 하구암리(묘곡, 중구)	
제천군	청풍중학구	청 풍 중	제천군 청풍면 금성면 수산면	읍리, 비봉리, 양평리, 도곡리, 대류리, 신리, 용곡리, 연촌리, 단리, 도리, 실리곡리, 도화리, 학현리, 북교리 성내리, 월굴리(1-5반) 능강리, 서곡리(하방곡, 상방곡), 상천리	
	수산중학구	수 산 중	제천군 수산면 한수면	고명리, 울지리, 도전리, 전곡리, 다불리 오티리, 구곡리, 괴곡리, 수산리, 내리, 계란리, 적곡리, 수리, 대전리, 수곡리, 서곡리(상방곡, 하방곡 제외) 덕곡리	수산면 대전 2구(3-4반), 수곡2리, 한수 면 덕곡리, 신 덕중학구와 공동중학구
	한수중학구	한 수 중	제천군 한수면	송계리, 탄지리	
	백운중학구	백 운 중	제천군 백운면 중원군 산척면	전지역 석천리(합천, 석문 부락)	
	봉양중학구	봉 양 중	제천시 제천군 봉양면	영천1동(10통4반, 11통3반) 구곡리, 마곡리, 삼거리, 공전리, 연박리 원박리, 장평리, 주포리, 팔송리, 봉양리 구학리, 옥전리, 영암리, 학산리(7, 8반 제외), 명도리(6-8반)	

시군별	학교군(구)	중학교명	학군(구) 소속 지역		비 고
			지역명	해 당 지 역	
제천군	송학중학구	송 학 중	제천군 송학면	송한리, 포전리, 도화1리, 시곡리, 입석리, 장곡리, 무도1,2리	무도1,2리:제 천시 학교군 과 공동학구
	신덕중학구	신 덕 중	제천군 덕산면 수산면 한수면	전지역 수곡2리, 대전2구(3-4반) 서창리, 덕곡리	수산면 수곡 2리, 대전2구 (3-4반), 한수 면 덕곡리:수 산중학구와 공동중학구
단양군	단양중학구	단 양 중	단양군 단양읍 적성면	심곡리, 도전리, 별곡리, 상진리, 노동리, 고수리, 기촌리, 금곡리, 천동리, 마조리 수촌리, 장현리 상리, 하1,2리, 애곡리, 현곡리, 하진리	상리, 하1,2리 애곡리, 현곡 리, 하진리:단 양중학구및매 포중학구와 공동중학구
	단성중학구	단 성 중	단양군 단성면 대강면 적성면 북강면	상방리, 중방리, 하방리, 외중방리, 상북상리, 중현천리, 덕상리, 북하리, 가산리, 대장리, 화산리, 벌천리, 두항리, 고평리, 장회리, 양당리, 후곡리 장림리, 당동리, 용부원리, 두음리, 괴평리, 사인암리, 직티리, 황정리, 상금리, 미노리, 덕촌리, 장정리, 사동리, 울산리, 남천리, 남조리, 무수천리, 신구리, 방곡리 상리, 하1,2리, 애곡리, 현곡리, 하진리, 성곡리 명전리	단성면 벌천 리, 대강면 북 강면 명전리: 로경부동로중 학구와 공동 중학구 상리, 하1,2리 애곡리, 현곡 리, 하진리:단 양중학구및매 포중학구와 공동중학구

시군별	학교군(구)	중학교명	학 군 (구) 소 속 지 역		비 고
			지역명	해 당 지 역	
단양군	가곡중학구	가 곡 중	단양군 가곡면	향산리, 보발리, 사평리, 대대리, 어의곡리, 여천리, 가대리(백암), 덕천리	가곡면, 여천리, 덕천리, 매포읍, 괴리, 학구
			매포읍	상괴리	매포읍, 괴리, 학구
	단산중학구	단 산 중	단양군 어상천면	석교리, 대전리, 임현리, 연곡리, 방북리, 덕문곡리, 심곡리, 울곡리	
			가곡면	가대리(백암 제외)	
	영춘중학구	영 춘 중	단양군 영춘면	사지원리(비마루, 군간나루), 상리, 오사리, 하리, 웅진리, 동대리, 백자리, 남천리, 의풍리	
매포중학구	매 포 중	단양군 매포읍	도담리, 도곡리, 상시리, 안동리, 평동리, 하시리, 우덕리, 매포리, 어의곡리, 하괴리, 상괴리	매포읍, 상괴리, 가곡면, 여천리, 덕천리, 가곡중학구와 공동학구	
		적성면	상원곡리, 파랑리, 하원곡리, 대가리, 소아리, 각기리, 기동리, 상리, 하1.2리		
		가곡면	여천리, 덕천리(하덕천)	적성면, 상리, 하1.2리, 애곡리, 현곡리, 하진리, 단양중학구 및 매포중학구와 공동학구	
영춘중학구	별 방 교 장	단양군 영춘면	별방리, 장발리, 사이곡리, 만종리, 유암리, 사지원리(비마루, 군간나루 제외)		

나. 타도 전입생 중학구

시군별	학교군(구)	중학교명	학군(구) 소속 지역		비 고
			지역명	해 당 지 역	
청원군	오창중학구	오 창 중	충청남도 연기시 남면	화덕리	
	부강중학구	부 강 중	충청남도 연기시 남면	부용리	
보은군	보은중학구	보은여자중	경상북도 북문리	운흥리, 중별리	
영동군	추풍령중학구	추풍령중	경상북도 북문리	광천리	광천리:김천시학교공공중학구
			상주군 상요동면	반계리(반징개)	
괴산군	송면중학구	송 면 중	경상북도 북문리	입석리	입석리, 화북중학구와공공중학구
음성군	감곡중학구 매곡여자중학구	감 곡 여자중	경기도 여주군 접동면	뇌곡리, 원부리	
			이천시 이월면	총곡리(포기실)	
단양군	단성중학구	단 성 중	경기도 단양군 동서면	명전리	명전리, 경북 단양군 동서면공공중학구와공공중학구

시도별	학교군(구)	중학교명	학군(구)소속지역		비고
			지역명	해당지역	
충남	병천중학구	병천중 아우내중	청원군 오창면	성재2구(방화골), 성재3구(강정)	
전북	무주중학구	무주중	영동군 용화면	여의리	
	설천중학구	설천중	영동군 용화면	조동리,안정리,월전리,용화리,용강리	

참고사항

관계법령 발췌서

□ 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04호, 1993. 11. 13.)

○ 제69조 (입학 등의 허가) ③중학교의 입학지원자에 대하여는 지역별, 학교군별로 추첨에 의하여 그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다만,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에는 중학구를 설정하여 그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며, 지체부자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군내의 학교 중 특정학교를 지정하여 입학하게 할 수 있고, 체육특기자에 대하여는 당해 교육장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3퍼센트 범위안에서 입학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체육특기학교와 종목별 정원은 교육장이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정하여 고시하고, 체육특기자의 지정·입학방법 및 그 절차와 지체부자유자의 인정방법은 교육장이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 제112조의8 (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①후기학교의 신입생은 고사 성적순에 따라 주간부·야간부순으로 선발하되 주간부는 고등학교군(이하 "학군"이라 한다) 별로 추첨에 의하여 당해 교육감이 각 고등학교에 배정하고 야간부는 당해 교육감이 각 학교에 통보한 고사 성적순에 따라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군은 시·도별로 학교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참작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의안 번호	제 72-6 호
의결년월일	1993. 12. (제 회)

'95학년도 국·중학교설립계획 변경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3. 12. 6 .

'95학년도국·중학교설립계획변경안

=====

의안 번호	32-6
----------	------

제출년월일 : 1993. 12. 6.

*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 변경사유

- o 교동국민학교 이전 계획에 의거 용암동 택지개발지구내에 '95학년도 신설 예정인 가칭 용암국민학교 부지로 교동국민학교를 이전하고자 하며,
- o 제2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안번호 27 - 2호, '93. 8. 16.)에서 의결된 '95학년도국·중학교설립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 설립계획

- 변경 전

학교 급별	교육 청별	학 교 명 (가 칭)	위 치	개교 예정 학급	완성 학급	개교예정 년 월 일	설 립 별
국	청주	방죽국민학교	청주시 산남동 제2택지개발지구내	36	36	'95.3.1	공 립
		용암국민학교	청주시 용암동 택지개발지구내	36	36	'95.3.1	공 립
	제천	하소국민학교	제천시 하소동 택지개발지구내	36	36	'95.3.1	공 립
중	청주	용암중학교 (남·여공학)	청주시 용암동 택지개발지구내	12	36	'95.3.1	공 립

- 변경 후

학교 급별	교육 청별	학 교 명 (가 칭)	위 치	개교 예정 학급	완성 학급	개교예정 년 월 일	설 립 별
국	청주	방죽국민학교	청주시 산남동 제2택지개발지구내	36	36	95.3.1	공 립
	제천	하소국민학교	제천시 하소동 택지개발지구내	36	36	95.3.1	공 립
중	청주	용암중학교 (남·여공학)	청주시 용암동 택지개발지구내	12	36	95.3.1	공 립

- 변경내용 : 용암국민학교(가칭) 설립 계획 취소

□ 기타사항

o 학생수용계획

- 용암국민학교(가칭) 학생수용계획을 → 교동국민학교 학생수용계획으로

o 소요예산

- 용암국민학교(가칭) 소요예산을 → 교동국민학교 이전 소요예산으로
변경

(별첨 6)

의안 번호	제 32-5 호
의결년월일	1993. 12. (제 회)

교동국민학교이전계획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3. 12. 6.

교동국민학교이전계획안

의 번	안 번호	30-5
--------	---------	------

제출년월일 : 1993. 12. 6.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목 적

- 청주시 도심지 인구 공동화 현상에 의한 학령아동수의 감소로 교동국민학교의 소규모화 초래
- 청주시 동편 중심부에 있는 주성·중앙·우암국민학교와 인접하여 학구관리 및 학교간 균형발전 저해
- 균형적인 학교재배치로 열악한 교육시설을 현대화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및 교육재정의 효율화 도모

□ 이전계획

- 이전시기 : '95. 3. 1.
- 이전위치
 - 현 재 : 청주시 수동 180번지
 - 이 전 : 청주시 용암동 택지개발지구내 (가칭 용암국)
- 교동국민학교 현황

학 교 명	학급수	학생수	부 지 (㎡)	건 물				교 직 원 수			
				교실	사택	창고	화장실	교원	일반	기능	계
교동국교	19	760	13,449	32.5	1	2	3	23	1	4	28

□ 학생수용계획

0 교동국 통학구역 및 조정후 현황

현행			조정후				분산 수용 인원
학교명	학생수	통학구역	학교명	통학구역	거리 (M)		
					최장	최단	
교동국	656	북2가 5통 북1가 4통 1,4반 북1가 6통 수동 1-9, 14-9통	주성국	북2가 5통	600	400	31
			중앙국	북1가 4통 1,4반 수동 1-7, 19통	600	100	406
			우암국	수동 8-9, 14-18통	600	300	219
계	656		3교				656

0 관련학교 학생수용계획

구분		교동국		주성국		중앙국		우암국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93. 현재		19	760	30	1,236	35	1,467	34	1,422
'95. 예정	이전전	19	656	24	962	28	1,120	27	1,067
	이전후			25	993	37	1,526	31	1,286
교실 보유 현황	보통교실			30		37		34	
	관리실			3		3		3	
	특별교실			4.5		4.5		4.5	
	기타교실			8.5		4		8.5	
	계			46		48.5		50	
비고	분산수용후 관련학교 부족시설은 없음								

o 이전후(용암지구) 교동국 학생수용계획

수 용 계 획		소 요 교 실 수				비 고
학급수	학생수	보통	특별	관리	계	
36	1,512	36	5	3	44	

□ 교동국민학교 사용계획

- o 청원군 가덕면 상야리 산4-23번지에 위치한 충청북도과학교육원을 이전 사용할 계획임.

□ 참고사항

- o 교육장 의견서 1부.
- o 교동국민학교장 의견서 1부.
- o 현행 학구도 1부.
- o 조정후 학구도 1부.
- o 교동국 이전 위치도 1부.

의 건 서

- . 청주시 수동 180번지에 위치한 교동국민학교는 1933년 5월 29일 개교한 이래 60여년간의 청주시 초등 교육기관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으나,
 - 1. 청주 도심지 공동화 현상에 의해 취학아동수 및 학급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 2. 청주 중심부의 주성국, 중앙국, 우암국, 용담국교와 인접하고 있어 학구관리 및 학교간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 3. 인근학교에 비해 교육시설의 낙후되어 학교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 현 교동국민학교를 '95. 신설 예정인 청주시 용암동 용암택지개발지구내(72블록)로 이전하여 쾌적하고 현대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교교육에 정진 할수 있도록 하며, 교동국민학교 재학생은 인근학교인 주성, 중앙, 우암국교로 분산수용하고 교직원 및 물품, 비품(교재교구등), 학적부등은 이관하여 교동국교 전통을 승계 할수 있도록 하고, 부지 및 시설은 학생 과학관 또는 도서관등으로 활용하여 청주시 교육 및 균형적인 도시발전에 기여함과 '94. 신입생은 인근학교에 취학하도록 조정학구를 적용하고 재학생은 '95. 3. 1.자로 적용 시행 하는것이 다소의 불편을 줄일수 있다고 사료되어 교동국민학교 이전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993. 12. 1

충청북도청주교육청 교육장 양공연 (인)

충청북도교육감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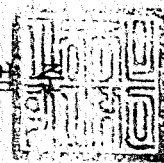
학교장 의견서

취학 아동의 감소로 학생수가 줄어들어 따라서 용암지구로 학교 이전에는 찬성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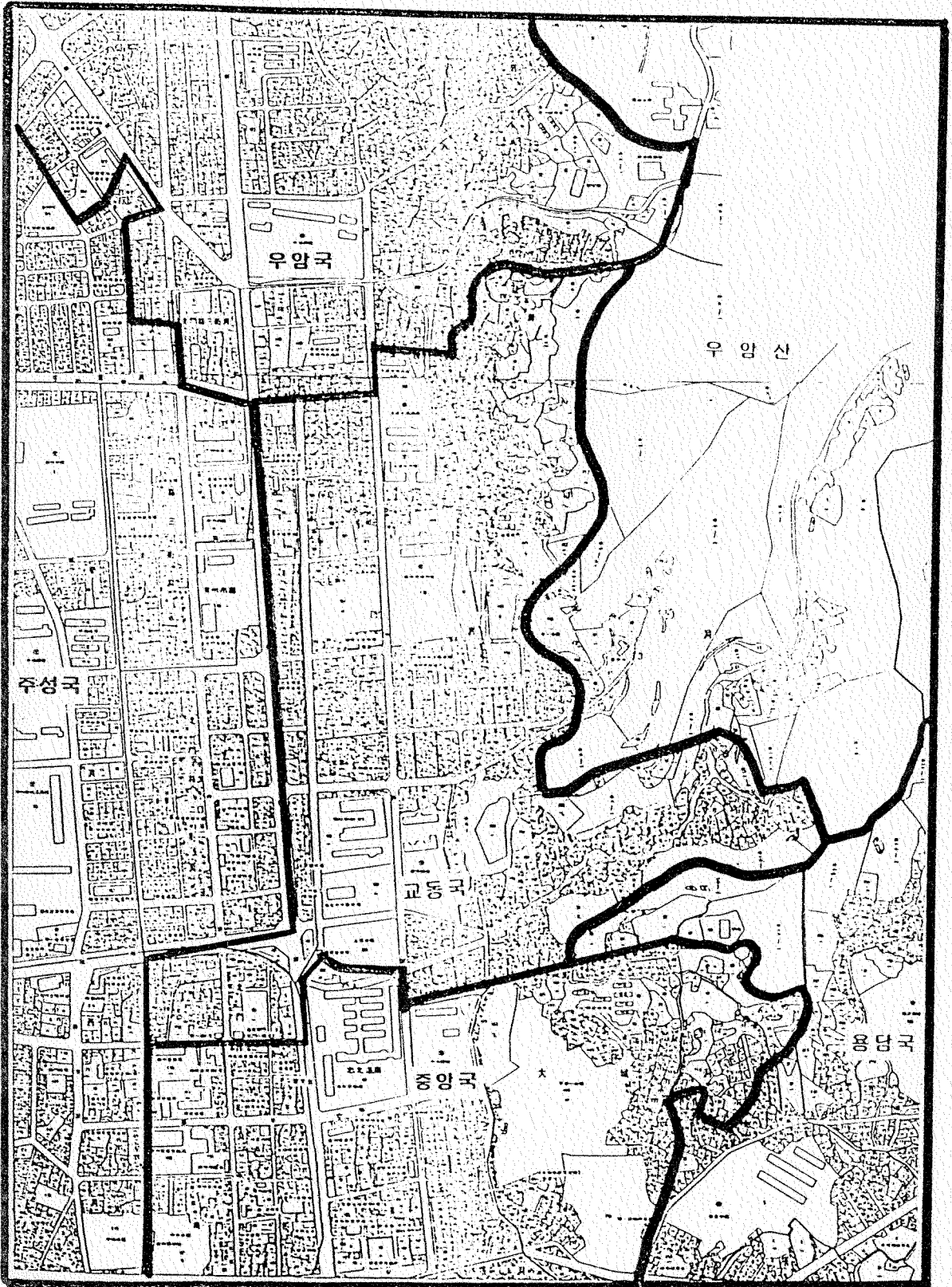
그러나 경과 조치 일환으로 일시 학구(공동)에 의한 학생 이동 현황을 살펴 본 결과 6학년을 제외한 타학년은 잔류학생수가 30% 정도 밖에 안되어 이러한 환경과 여건하에서 교육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경과 조치는 하지 않고 95년 3월 1일에 학교 이전과 동시에 학생들을 이동하는 것이 교육적인 면으로 보아 좋을듯 하며 현재 학부모들도 같은 의견이고 동문들에게서는 뚜렷한 의사 표출이 없으나 현재 총동문회 조직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 입니다.

1993. 11.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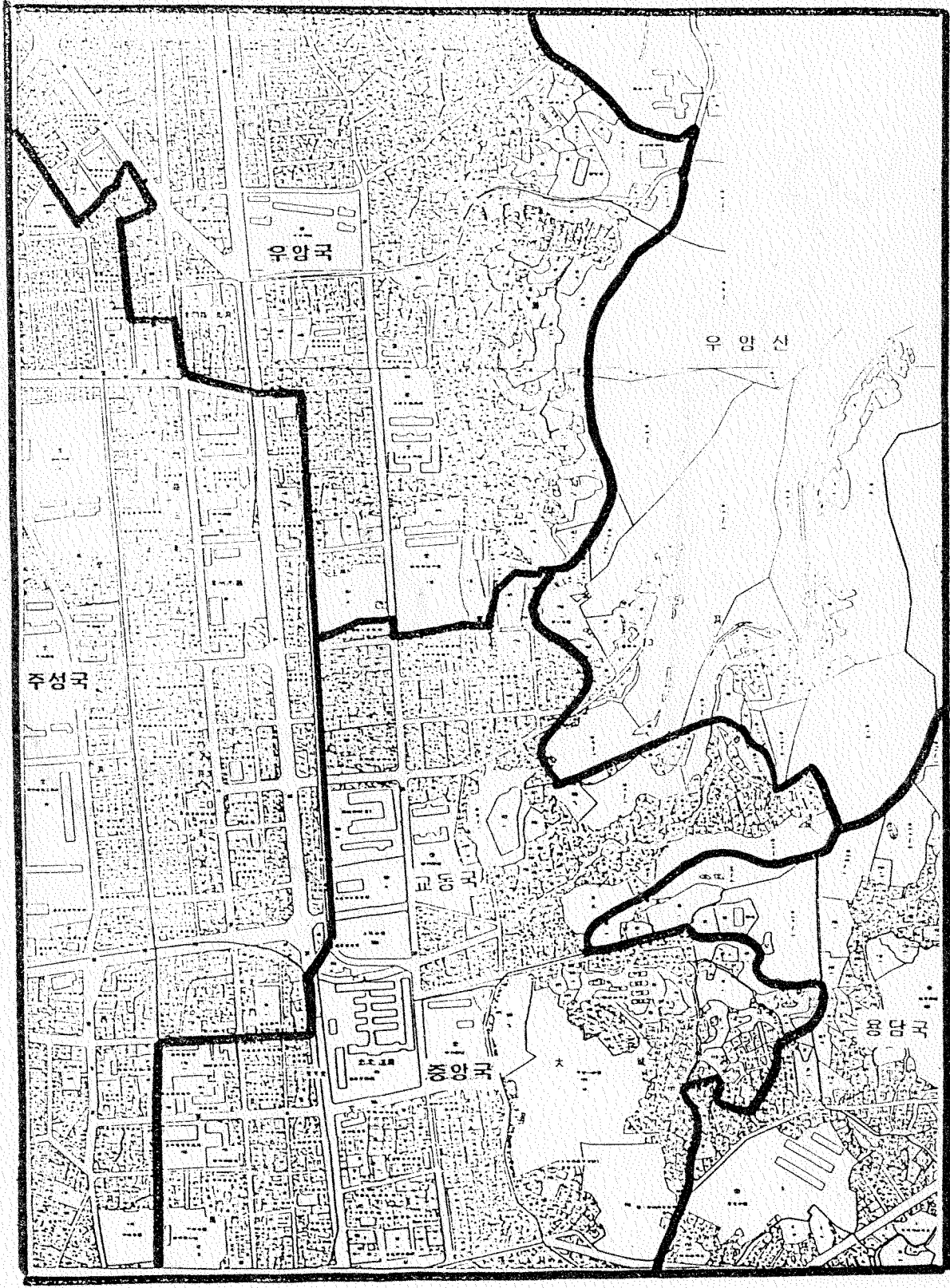
교 동 국 민 학 교 장 이 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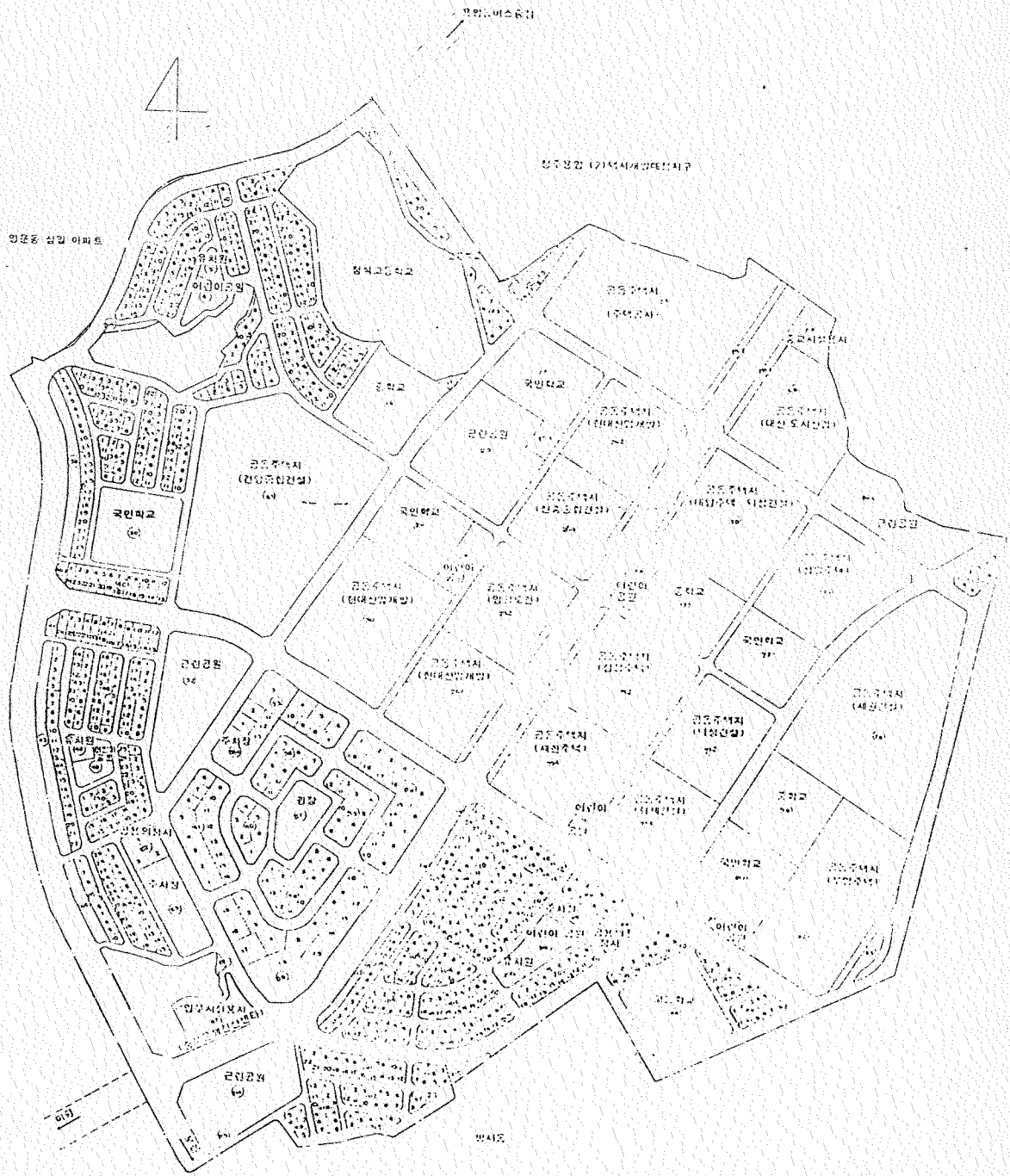
교통국교 조성전 학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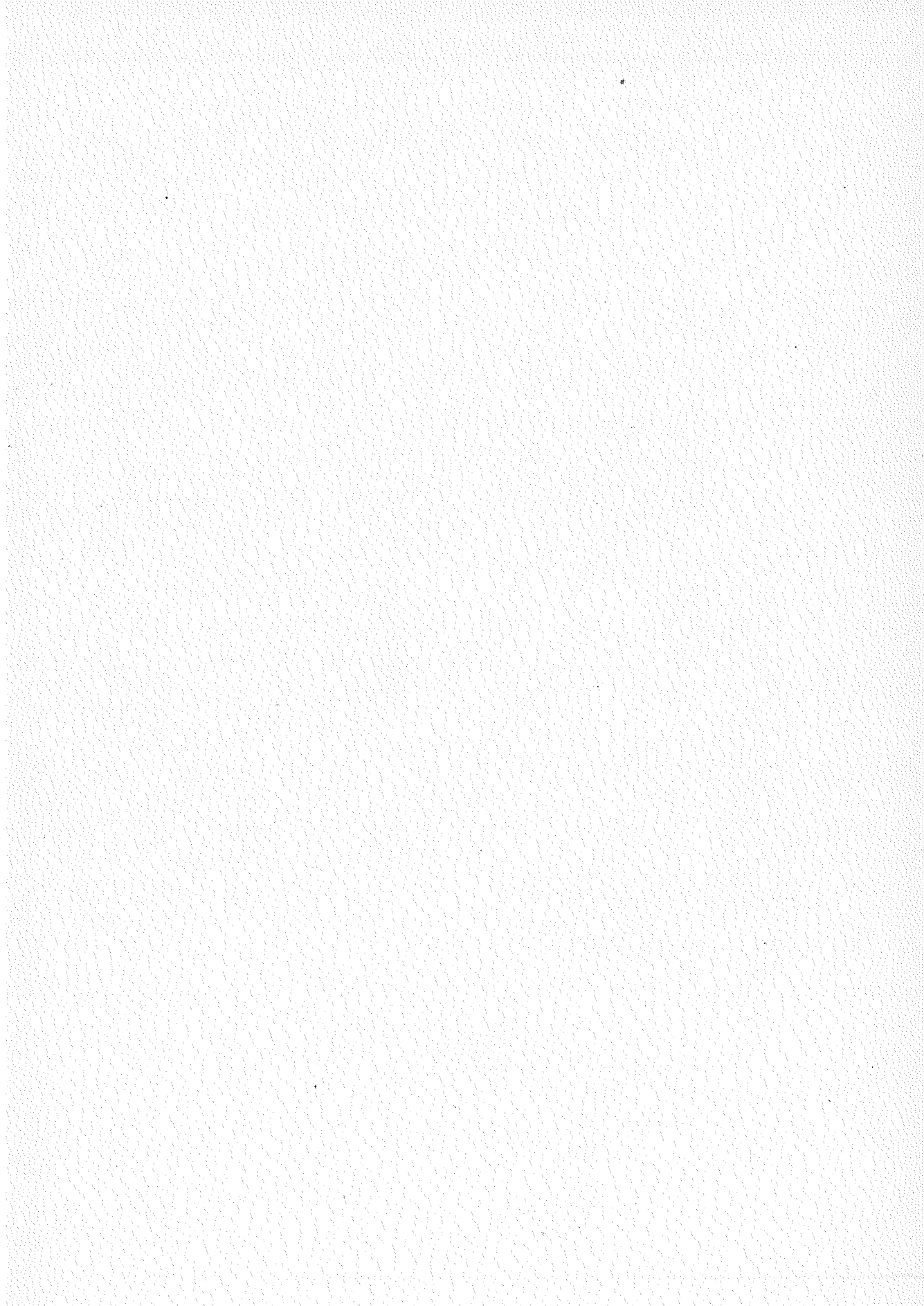


교통국교 조정후 학구도



교통국 이전후(용암지구) 위치도





(별첨 7)

의안번호	제32-4호
의결	1993. 12. / .
년월일	(제32회)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3. 12. / .

'93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의안 번호	32-4
----------	------

제출년월일 : 1993. 12. /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제안이유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의 사용허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대상기관 : 괴산교육청
- 변경 내역
 - 취득

(단위:㎡/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토 지	86,052.28	18,388,153	86,052.28	18,388,153	0	0
건 물	88,608.05	35,065,183	88,608.05	35,065,183	0	0
공작물	7 식	25,448	7 식	25,448	0	0
계		53,478,784		53,478,784		0

- 처 분

(단위:㎡/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토 지	212,466.3	4,756,855	212,466.3	4,756,855	0	0
건 물	25,382.6	1,359,493	25,382.6	1,359,493	0	0
공작물	55 식	14,742	55 식	14,742	0	0
계		6,131,090		6,131,090		0

- 유상사용허가

(단위 : m²/천원)

구분	당 초		변 경		증 감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토 지	663,728.16	92,625	663,728.16	92,625	0	0
건 물	24,910.13	109,081	24,910.13	109,081	0	0
계		201,706		201,706		0

- 무상사용허가

(단위 : m²)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토 지	89,475.0	90,467.0	992.0
건 물	7,278.6	7,278.6	0

□ 제안 근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공유재산관리계획)

□ '93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내역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93.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내역

과산 교육청

(단위 :㎡)

구분	재산별	학교명	사업명	당초	변경	증감	기간	사유	비고
사용허가	토지	증평국	무상사용허가	0	992.0	992.0	'93.12.10 - '94.12.31	증평도서관 건립부지	설명지표 5-8쪽

관계법령(부분)발췌서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교육감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속하는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2월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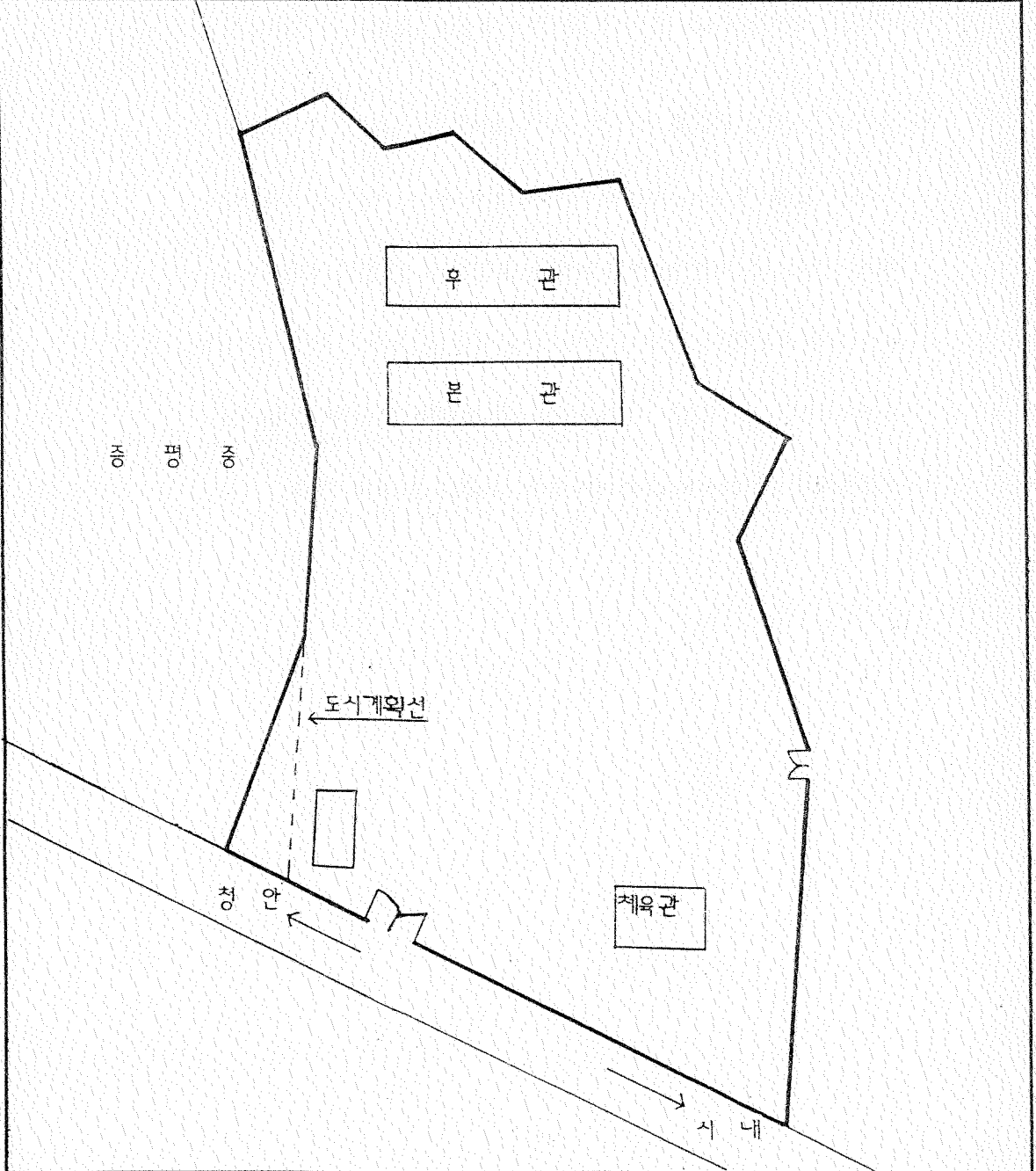
까지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관리 및 처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증평국민학교토지무상사용허가배치도

용 도	소 재 지	자 번	지 목	면적(㎡)	기 간
도 서 관 건립부지	증평읍 증평리	1044 - 2	학교용지	992.0	1993.12.10- 1994.12.31



충청북도증평출장소

우 (367-900) / 충북 괴산군 증평읍 증평리 915 - 26 / (0445) 36 - 4111 / 전송

문서번호 총무 86640 - 5938

시행일자 '93. 11. 26

경 유

수 신 충청북도괴산교육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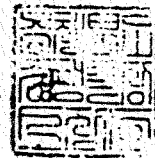
참 조 관 리 과 장

선 결	유 중		지 시
접	일자 시간	93. 11. 26	결
수	번호	4330	재
처	리 과		공
담	당 자		람

계 목 : 증평 공공도서관 부지 사용허가 요청

1. 총무 86640 - 5822 ('93. 11. 6) 및 관리 13330 - 1765 ('93. 11. 20)호와
관련임.
2. '93 국고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증평 공공도서관 건립부지의 무상 사용허가
요청에 있어서-귀청에서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89조 및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 20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물의 기부 체납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
하였으나,
3. 시설물의 기부체납(관계규정)은 충청북도의회의 승인사항으로서 시기적으로 불때
사전에 도의회의 승인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오니, 93년도말 이내에 추진되어야 할 사업의
특수성과 긴급성을 특별히 고려, 우선 무상사용을 허가하여 주시면 시설이 완공되고 집기,
도서, 행정장비등 도서관 필수시설을 완비한후 귀청에 기부 체납이 되도록 필요한 절차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끝.

충청북 증평출장소



증평공공도서관 건립계획(안)

충청북도증평출장소

□ 사업개요

○ 명 칭 : 증평 공공도서관

○ 위 치 : 괴산군 증평읍 일원

○ 규 모 :

- 건 평 : 300평 (지상 2층)

- 열람석 : 200석

○ 사업기간 : '93. 1. 1 - 12. 31

○ 사업비 : 898,421 천원

- 시설비 : 868,418 천원 (국비 220,000천원)

- 시설부대비 : 30,003 천원

